

자산비례 벌금제의 입법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일시

2020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

주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병철 의원실



자산비례 벌금제의 입법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목 차

- 개회사 1
- 환영사 3
- 주제발표
 - | 발제 1 | 자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인식 분석 5
박미숙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발제 2 | 일수벌금형제도의 정당성과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 39
최호진 교수 단국대학교 법학과
- 종합토론 73
 - 한영수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진우 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 오창익 사무국장 인권연대
 - 박혜림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이경재 사무관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





개 회 사



한 인 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입니다. 최근 “자산 비례 벌금제의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데 맞추어 오늘 <자산비례 벌금제의 입법방안>의 제목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형사정책연구원은 국가의 형사정책에 관한 주요이슈별 연구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0여년에 걸쳐 도입 논의만 되어 온 이른바 일수벌금제 내지 자산 비례 벌금제의 입법방안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연구해 왔습니다.

입법안의 발의와 함께 마련된 이 자리는 지난 30여 년에 걸쳐 논의되어 온 자산비례 벌금제의 도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입법의 정당성과 구체적인 도입방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벌금형은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형벌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벌로서 근대 형벌제도 확립 이후 제기된 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는 주요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총액벌금형은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벌효과가 균등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다시 구금되고 있어 벌금형의 자유형으로의 악순환이라는 폐단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실제 노역장이 아닌 교도소 수감·복역케 함으로써, 무자력자에겐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도 타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개인의 자력에 따른 벌금형 부과라는 자산비례 벌금제의 도입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번번이 개인 자산 조사의 어려움, 책임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종래 거의 연구된 바가 없는 자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인 입법방향을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유관 부처, 그리고 학계의 토론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정책세미나는 평소 존경하는 소병철 의원님께서 취지에 공감해주시고, 공동주최를 주도해주셔서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자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공감하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자리를 같이 해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소속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연구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각계의 국민의 소리와 입법자와 전문가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한 다리로서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가 이러한 저의 연구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에는 국회의 여성아동인권포럼의 의원들과 함께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라는 제목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1대 국회에 던지는 입법과제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민의 목소리, 구리고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저희 연구원의 정책연구 역량을 여러 의원들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과 국회 법사위 사이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가정책의 초석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환영사



소 병 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입니다.

오늘 형사법 분야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뜻깊은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깊이있고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해주신 발제·토론자 선생님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형사처벌 중에서 벌금제는 재산 박탈을 형벌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적합하고 또 중요한 형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벌금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획일적·산술적 과형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7일 저희 의원실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자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자산비례벌금제’가 도입된다면, 벌금의 위하력은 강화되면서도 형벌에 있어서의 실질적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산비례벌금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30년 넘게 논의되어온 내용입니다. 공평하고 경제적 능력도 반영된 벌금제도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을 해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꼭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간의 여러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서 입법 결실의 강력한 추진력을 발동해주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법사위 위원으로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향으로 형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주·제·발·표 1

자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인식 분석

박미숙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인식 분석

박미숙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들어가는 말

현행 총액벌금제하에서는 벌금액의 상한이 정해져있고 그 범위내에서 법관이 벌금액을 정하므로 선고받는 사람의 재산상태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총액벌금형 제도가 갖는 본질적인 한계로 인해 벌금형 제도의 개선 내지 대체집행 문제는 꽤 오랜 역사를 갖고 논의되어 왔다. 1986년부터 총액 벌금제 대신 일수벌금제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 법무부 형사법 개정논의와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논의 때도 벌금형의 불평등을 피하기 위한 제도로써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이른바 일수벌금제 도입이 추진된 바 있다. 1975년 일수벌금제를 도입한 독일의 법제에 대한 연구 및 소개는 1980년 후반부터 1990년대 초기에 걸쳐 본격화되었기 시작하였고¹⁾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1992년 형법개정안에서는 벌금액 산정에서 피고인의 경제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형법개정안 제44조 제4항).²⁾

이른바 일수벌금제의 도입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개인의 소득·재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수벌금제가 선불리 도입될 경우 자칫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³⁾ 199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일수벌금제 관련 기사는 총 99개 정도인데,⁴⁾ 기사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벌금형 제도 개선의 전제가 개인의 소득·재산조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제도 인프라의 구축 가능성으로 집약되는 것 같다. 현재 개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파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소득세, 재산세 자료 등으

1) 강동범, 재산형의 문제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5호, 1991, 88면 이하; 신의기,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3호, 1996/가을, 117면 이하 참조

2)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형법개정자료, 1992. 10., 55~56면; 이재상, 벌금형제도 재고, 형법개정의 제논점, 형사법개정 특별심의회위원회, 1985, 181면.

3)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형법개정자료, 1992. 10., 55~56면; 이재상, 벌금형제도 재고, 형법개정의 제논점, 형사법개정 특별심의회위원회, 1985, 181면.

4) 출처: BigKinds(최종 확인:2020.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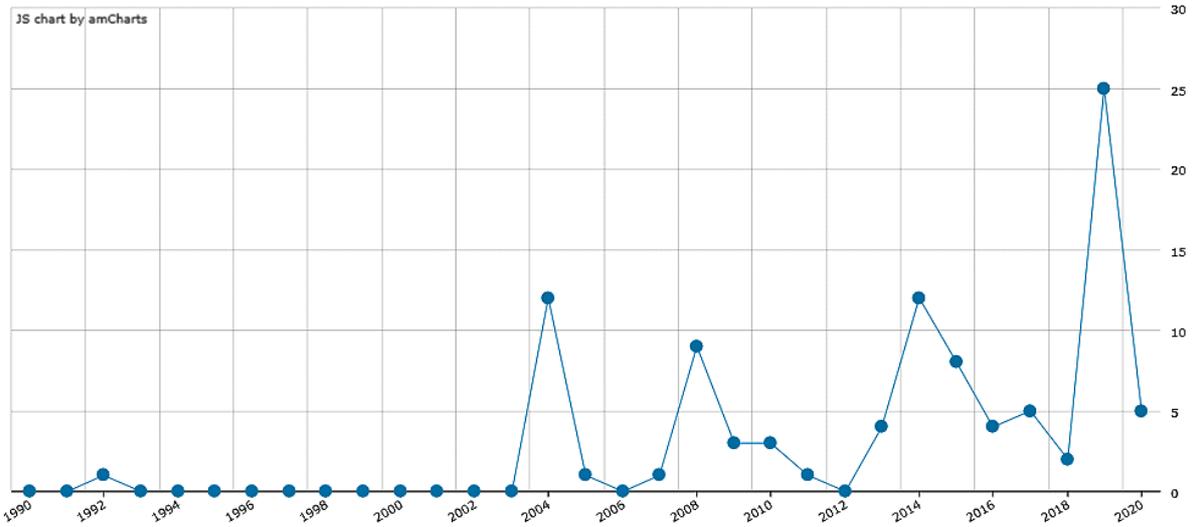
로 가능한데 만일 재산비례 벌금제가 도입된다면 이들 자료는 재산비례 벌금제의 산정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재산비례 벌금제의 도입 여부에 대한 반대 의견 중 현재 개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파악을 위한 위 자료로는 불충분하며, 재산 등의 파악을 위한 인프라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시기상조론이 압도적이다.

이처럼 재산비례 벌금제는 번번이 시기상조론과 현실성 결여 등을 근거로⁵⁾ 반대에 부딪혀 실제 입법 성과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30년 이상의 제도 도입 논의는 그 어떤 영역이나 제도 논의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논의의 결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학계 및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팽팽한 측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법조계에서도 재산상황을 근거로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입법전문가 영역 및 법조계에서 논의되어온 재산비례 벌금제를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 반대논거로서 든 시기상조론이나 현실성 결여 등에 대한 여론의 향방을 한 번 점검해보는 것도 이 시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입법의지는 강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정부 차원의 노력은 국민의 의견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점검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벌금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활용가능성 등을 국민의 관점에서 점검해봄으로써 실제 벌금제도 개혁을 위한 실효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을지 등을 전망해보는 것은 필요하다. 벌금형 제도는 일반 국민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형벌이다. 교통사고나 절도 등 경미한 범죄유형은 대부분 벌금형에 처하거나 자유형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행 벌금형제도에서 일수벌금제로의 체계 변화는 전문가 등 학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벌금형 제도개선에서 일반 국민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정책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평가의 주체로서 일반인에 대한 제도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과 전문가 의견은 벌금형 제도의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⁶⁾

5) 조선일보, 2019.08.2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6/20190826021_41.html (최종 확인: 2020.10.30.).

6) 1990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이른바 일수벌금제 관련 언론 기사 분석에 의하면 총 99개 일수벌금제 관련 기사 중 문재인 정부에서의 기사(2017.5.10.~ 현재)가 3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1〉 연도별 일수벌금제(재산비례 벌금제) 기사 수

II. 일반인 조사 결과

1. 조사설계 및 방법

가. 조사설계

조사 목적은 현행 총액벌금형 제도와 그 문제점, 현황 자료를 토대로 벌금형 제도의 개혁 방향을 짚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형사법과 벌금형의 수범자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제도 인식과 평가 그리고 개혁 방안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현정부의 국정과제이다. 벌금형은 특히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일반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교통안전 위반 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특히 벌금형은 납부자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벌금형 제도 개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벌금형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나아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벌금형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나.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벌금형 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의 일반 성인남녀 1,063명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19년 6월 21일부터 8월 14일이었다. 조사대상자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별과 인구특성에 비례해 할당 배분하여 수집한 후, 무작위로 응답하거나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응답을 배제하고 유효응답만을 분석하였다.

〈표 2-1〉 응답자 특성

| 구 분(N=1,063명) | | 응답자 수(%) |
|---------------|---------------|-----------------------|
| 성별 | 남성 / 여성 | 531(50.0) / 532(50.0) |
| 연령 | 20대 | 173(16.3) |
| | 30대 | 176(16.6) |
| | 40대 | 208(19.6) |
| | 50대 | 224(21.1) |
| | 60대 이상 | 282(26.5) |
| 지역 | 서울 | 216(20.3) |
| | 경기/인천 | 333(31.3) |
| | 대전/충청/세종 | 101(9.5) |
| | 광주/전라 | 97(9.1) |
| | 대구/경북 | 101(9.5) |
| | 부산/울산/경남 | 164(15.4) |
| | 강원/제주 | 51(4.8) |
| 최종학력 | 중졸 이하 | 22(2.1) |
| | 고졸 | 293(27.6) |
| | 대졸 | 644(60.6) |
| | 대학원졸 이상 | 104(9.8) |
| 개인 월평균 소득 | 소득 없음 | 143(13.5) |
| | 100만 원 미만 | 124(11.7) |
| | 100~200만 원 미만 | 187(17.6) |
| | 200~300만 원 미만 | 232(21.8) |
| | 300~400만 원 미만 | 151(14.2) |
| | 400~600만 원 미만 | 129(12.1) |
| | 600만 원 이상 | 97(9.1) |
| 가구 자산규모 | 1억 미만 | 378(35.6) |
| | 1~3억 미만 | 273(25.7) |
| | 3~5억 미만 | 186(17.5) |

| 구 분(N=1,063명) | | 응답자 수(%) |
|---------------|-----------|-----------|
| | 5~7억 미만 | 93(8.7) |
| | 7~10억 미만 | 58(5.5) |
| | 10~15억 미만 | 44(4.1) |
| | 15억 이상 | 31(2.9) |
| 직업 | 관리직 및 전문직 | 146(13.7) |
| | 사무직 | 282(26.5) |
| | 판매 서비스직 | 88(8.3) |
| | 농/어/임업 | 12(1.1) |
| | 기술/기능직 | 77(7.2) |
| | 단순 노무직 | 44(4.1) |
| | 직업군인 | 5(0.5) |
| | 전업주부 | 173(16.3) |
| | 학생 | 66(6.2) |
| | 무직 | 110(10.3) |
| | 기타 | 60(5.6) |

2. 조사결과 분석

가. 응답자의 벌금형 제도 인식 여부

1) 벌금형 선고 경험 유무와 납부 방법

아래 <표 2-2>에 의하면 조사대상 일반인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299명으로 2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벌금형 선고 경험 유무

| 문 항 | 응답자 수(%) |
|------|-----------|
| ① 있다 | 299(28.1) |
| ② 없다 | 764(71.9) |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299명 중 벌금 납부 방법에 대하여 현금납부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80명으로 93.6%이며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에 분납 및 연납 11명(3.7%), 사회봉사대체 3명(1.0%), 노역장 유치 1명(0.3%), 불이행 4명(1.3%)으로 확인되었다(표 2-3).

〈표 2-3〉 벌금 납부 방법

| | 문 항 | 응답자 수(%) |
|---|----------|-----------|
| ① | 현금(카드)납부 | 280(93.6) |
| ② | 분납 및 연납 | 11(3.7) |
| ③ | 사회봉사대체 | 3(1.0) |
| ④ | 노역장유치 | 1(0.3) |
| ⑤ | 불이행 | 4(1.3) |

2) 벌금형과 과태료 구분 여하

벌금형 제도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사전에 실시한 일반인 대상 예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와 벌금형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가 형벌제도로써 벌금형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는지 질문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2-4〉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중 벌금형과 과태료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수 가운데 656명으로서 61.7%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자 중 절반이 넘는 약 61.7%의 일반인들은 스스로 벌금형과 과태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표 2-4〉 벌금형과 과태료 구분 여하

| | 문 항 | 응답자 수(%) |
|---|----------|-----------|
| ① | 구분할 수 있다 | 656(61.7) |
| ② | 구분할 수 없다 | 407(38.3) |

아래 〈표 2-5〉는 벌금형과 과태료 구분 여하를 조사 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 교차분석한 내용이다. 결과에 따르면,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약 60~70% 사이의 비슷한 비율이 확인되었다. 연령은 2-30대보다 40대 이상의 조사참여자들이 더 잘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벌금형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벌금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약 7.2% 정도 많은 인원이 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5〉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벌금형과 과태료 구분 여하

| 문항 | 응답자 수(%) | | | | | | | | | | |
|----------|---------------|---------------|--------------|---------------|---------------|--------------|---------------|---------------|---------------|---------------|---------------|
| | 성별 | | 학력 | | | | 연령 | | | 벌금 경험 | |
| | 남 | 여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 대학원졸 이상 | 2-30대 | 4-50대 | 60대 이상 | 있음 | 없음 |
| ① 할 수 있다 | 372 (70.1) | 284 (53.4) | 15 (68.2) | 182 (62.1) | 387 (60.1) | 72 (69.2) | 195 (55.9) | 266 (61.6) | 195 (69.1) | 200 (66.9) | 456 (59.7) |
| ② 할 수 없다 | 159 (29.9) | 248 (46.6) | 7 (31.8) | 111 (37.9) | 257 (39.9) | 32 (30.8) | 154 (44.1) | 166 (38.4) | 87 (30.9) | 99 (33.1) | 308 (40.3) |

나. 벌금형과 자유형의 집행유예 선택 여부

기본적으로 벌금형은 자유형의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운 형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중에서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 차라리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례도 간혹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생겨나는 이유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참여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래 〈표 2-6〉은 벌금형과 자유형의 집행유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택한 응답이 708명으로 66.6%, 집행유예를 선택한 응답이 355명으로 33.4%가 집계되었다.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을 벌금선고 경험자에 한하여 분석한 결과 벌금형을 선택하는 비율이 약 3%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2-6〉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택 여부

| 문항 | 응답자 수(%) | |
|-------------|------------|-----------------|
| | 전체(n=1063) | 벌금선고 경험자(n=299) |
| ① 벌금형 | 708(66.6) | 208(69.6) |
|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 | 355(33.4) | 91(30.4) |

각각의 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벌금형이 자유형의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형벌이므로’가 418명으로 벌금형을 선택한 인원 중 59%를 차지하였다.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8%, 벌금형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선택한 비율은 14.1%로 확인되었다(표 2-7).

〈표 2-7〉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n=708)

| 문항 | 응답자 수(%) |
|--|-----------|
| ① 벌금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범죄이므로 | 418(59.0) |
|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 190(26.8) |
| ③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므로 | 100(14.1) |

아래 〈표 2-8〉은 해당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징과의 관계를 교차분석표로 나타낸 것이다. 앞서 〈표 2-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벌금선고 경험자의 경우 징역형(집행유예)보다 벌금형으로 선고받겠다는 응답자가 많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할 때 이러한 차이는 ‘②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재범 시 판결에 불리하므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시 이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26.9%였지만, 벌금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28.4%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8〉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벌금형 선택 이유

| 문항 | 응답자 수(%) | | | | | | | | | | |
|-----------------------------|---------------|---------------|-------------|---------------|---------------|--------------|---------------|---------------|---------------|---------------|---------------|
| | 성별 | | 학력 | | | | 연령 | | | 벌금 경험 | |
| | 남 | 여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 대학원졸 이상 | 2-30대 | 4-50대 | 60대 이상 | 있음 | 없음 |
| 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가벼우므로 | 194 (56.2) | 224 (61.7) | 7 (50.0) | 115 (59.6) | 251 (58.6) | 45 (61.7) | 132 (56.4) | 173 (60.0) | 113 (60.8) | 123 (59.1) | 295 (59.0) |
|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재범 시 판결에 불리하므로 | 106 (30.8) | 84 (23.1) | 5 (35.7) | 52 (26.9) | 118 (27.6) | 15 (20.5) | 54 (23.1) | 80 (27.8) | 56 (30.1) | 59 (28.4) | 131 (26.2) |
| ③ 벌금 납부 여력이 충분하므로 | 45 (13.0) | 55 (15.2) | 2 (14.3) | 26 (13.5) | 59 (13.8) | 13 (17.8) | 48 (20.5) | 35 (12.2) | 17 (9.1) | 26 (12.5) | 74 (14.8) |

아래 〈표 2-9〉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응답자의 355명 중 167명인 47%가 구치소 및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 가지 않고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외에도 집행유예는 형을 면제받는 것과 같으므로 라는 응답과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라는 응답도 모두 25% 이상이 확인되었다.

〈표 2-9〉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택 이유(n=355)

| 문항 | 응답자 수(%) |
|---------------------------------|-----------|
| ① 집행유예는 형을 면제받는 것과 같으므로 | 98(27.6) |
| ② 교도소/구치소에 가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 167(47.0) |
| ③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 90(25.4) |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택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 참여자들 1,063명 중 총 418명(39.2%)은 벌금형이 집행유예에 비하여 가벼운 형벌임을 인식하고 그 이유 때문에 벌금형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전체 1,063명 중 8.5%에 해당하는 조사 참여자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벌금형 선택 여부와 벌금형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에 대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징인 개인소득 수준과 자산규모와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연관성을 살펴보았다(표 2-10). 먼저 개인소득과 벌금 선고 경험 여부와 벌금 혹은 집행유예선택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벌금형 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 문항에서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벌금선고 경험 여부와 벌금 혹은 집행유예 선택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이 낮은 경우 벌금선고 경험이 적으며 혹은 선고를 받았을 때 징역형(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을 선호한다는 결과로 확인된다. 반면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벌금형 제도의 주관적 인지도 결과는 개인소득이 높은 응답자들이 벌금형 제도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자산규모와의 연관성에서는 주관적 인지도만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자산규모가 큰 경우 벌금형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자산규모가 작은 경우에 벌금형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10〉 개인소득에 따른 벌금선고 여부/주관적 인지도/벌금 혹은 집행유예 선택

| 구분 | 상관계수 | | |
|------|---------|---------|---------------|
| | 벌금선고 여부 | 주관적 인지도 | 벌금 혹은 집행유예 선택 |
| 개인소득 | -.139** | .194** | -.082** |
| 자산규모 | -.002 | .171** | -.056 |

**p<.01

다. 벌금 납부 의사와 방법

본 조사항목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벌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아래 <표 2-11>에 의하면 일반인 응답자의 553명인 52%가 납부할 수 있으면 납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본인의 납부능력이 없으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납부하겠다는 응답이 247명으로 23.2%를 차지하고 있다. 즉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응답자의 75.2% 정도가 벌금 납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벌금 납부 의사와 방법

| 문 항 | 응답자 수(%) |
|--|-----------|
| ① 나에게 벌금 납부능력이 없으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납부한다 | 247(23.2) |
| ② 나의 힘으로 납부할 수 있을 만한 액수라면 납부한다 | 553(52.0) |
| ③ 벌금액이 너무 많다면 나에게 납부능력이 있더라도 사회봉사대체나 노역장유치를 선택한다 | 94(8.8) |
| ④ 벌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납부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봉사 대체나 노역장유치를 선택한다 | 123(11.6) |
| ⑤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사회봉사대체나 노역장유치를 선택한다 | 22(2.1) |
| ⑥ 최대한 납부를 미룬다 | 24(2.3) |

한편 이번 조사항목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벌금액이 많은 경우 납부능력이 있더라도 사회봉사대체명령이나 노역장유치를 선택하겠다고 한 응답이 94명으로 8.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벌금 납부의사는 있으나 벌금 납부능력이 없어 사회봉사 대체명령이나 노역장유치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11.6%와 비교해보아도 적지 않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노역장유치제도는 벌금 선고액이 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사회봉사 대체명령과 달리 납부능력이 있어도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례가 꽤 있다는 점을 본 조사 결과가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라. 노역장유치제도에 대한 의견

아래 <표 2-12>는 노역장유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묻은 결과이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9명인 55.4%가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환산기간이 불합리·불공정하고, 418명인 39.3%는 조세형평성이나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으므로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집행을 허용해

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전체 응답자의 393명인 37%에 이른다.

〈표 2-12〉 노역장유치제도에 대한 의견(다중응답)

| 문항 | 응답자 수(%) |
|--|-----------|
| ①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환산이 불합리·불공정하다 | 589(55.4) |
| ② 조세형평성이나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으므로 더 늘려야 한다 | 418(39.3) |
| ③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기간이 늘어나면 징역형과 다를 바 없어 벌금형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 | 183(17.2) |
| ④ 고액 벌금 미납자에게는 노역장유치 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393(37.0) |
| ⑤ 문제가 없다 | 54(5.1) |

한편 벌금형 제도 본래의 목적인 단기자유형의 피해 극복방안으로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징역형으로 환원되는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도 17.2%로 나타나 적지 않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마.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의견

1) 재산비례 벌금제 인지 여부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산비례 벌금제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아래 〈표 2-13〉에 의하면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72.9%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2-13〉 재산비례 벌금제 인지 여부

| 문항 | 응답자 수(%) |
|------|-----------|
| ① 있다 | 288(27.1) |
| ② 없다 | 775(72.9) |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인지여부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성별, 학력, 연령, 벌금 경험 여부)과의 관계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2-14〉와 같다.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교적 연령대가 높을수록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벌금 선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총 299명 중 96명인 32.1%가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이는 전체 응답자(1063)

명에 대한 조사결과인 27.1%보다 약 5.0% 정도 높은 수치이다.

〈표 2-14〉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재산비례 벌금제 인지 여부

| 문항 | 응답자 수(%) | | | | | | | | | | |
|------|---------------|---------------|--------------|---------------|---------------|--------------|---------------|---------------|---------------|---------------|---------------|
| | 성별 | | 학력 | | | | 연령 | | | 벌금 경험 | |
| | 남 | 여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 대학원졸 이상 | 2-30대 | 4-50대 | 60대 이상 | 있음 | 없음 |
| ① 있다 | 175 (33.0) | 113 (21.2) | 3 (13.6) | 54 (18.4) | 191 (29.7) | 40 (38.5) | 85 (24.4) | 125 (28.9) | 78 (27.7) | 96 (32.1) | 192 (25.1) |
| ② 없다 | 356 (67.0) | 419 (78.8) | 19 (86.4) | 239 (81.6) | 453 (70.3) | 64 (61.5) | 264 (75.6) | 307 (71.1) | 204 (72.3) | 203 (67.9) | 572 (74.9) |

2)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반 여부

아래 〈표 2-15〉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반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04명으로서 75.6%로 나타났다.

〈표 2-15〉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반 여부

| 문항 | 응답자 수(%) |
|--------|-----------|
| ① 찬성한다 | 804(75.6) |
| ② 반대한다 | 259(24.4) |

아래 〈표 2-16〉은 사회학적 변인 중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유무에 따른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반을 나타낸 것이다. 성별, 학력, 연령, 벌금형 선고 경험에 상관 없이 조사 참여자의 70% 이상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었다. 다만 벌금선고 경험이 있는 경우 전체 조사 참여자의 찬성 비율인 75.6%보다는 약간 낮은 73.9%의 찬성비율을 보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로 보인다.

〈표 2-16〉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유무에 따른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반

| 문항 | 응답자 수(%) | | | | | | | | | | |
|--------|---------------|---------------|--------------|---------------|---------------|--------------|---------------|---------------|---------------|---------------|---------------|
| | 성별 | | 학력 | | | | 연령 | | | 벌금 경험 | |
| | 남 | 여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 대학원졸 이상 | 2-30대 | 4-50대 | 60대 이상 | 있음 | 없음 |
| ① 찬성한다 | 403 (75.9) | 401 (75.4) | 20 (90.9) | 214 (73.0) | 486 (75.5) | 84 (80.8) | 265 (75.9) | 327 (75.7) | 212 (75.2) | 221 (73.9) | 583 (76.3) |
| ② 반대한다 | 128 (24.1) | 131 (24.6) | 2 (9.1) | 79 (27.0) | 158 (24.5) | 20 (19.2) | 84 (24.1) | 105 (24.3) | 70 (24.8) | 78 (26.1) | 181 (23.7) |

한편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학력/소득별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반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성별/학력/소득별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성 여부와의 관계는 집단별로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표 2-17). 이러한 결과는 위 <표 2-15>에서 확인한 75% 이상의 조사대상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와 함께 살펴보았을 때, 성별, 연령, 학력, 혹은 소득수준에 따라 편향된 결과(응답)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있어서 개인소득이 클수록 반대한다거나 혹은 개인소득이 작을수록 찬성한다거나 하는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자산규모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산규모가 큰 집단의 경우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반대하고, 자산규모가 작은 집단의 경우에는 재산비례 벌금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응답자의 자산규모 특징을 제외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 약 75.6%로 나타난 제도도입 찬성의견의 성별, 연령, 학력, 개인소득과는 상관없이 전반적인 인식 혹은 의견이라는 결과라 볼 수 있다(표 2-17).

<표 2-17> 학력/소득/자산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성의견 상관계수

| 구분 |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반 |
|------|----------------|
| 성별 | -0.006 |
| 연령 | 0.000 |
| 학력 | -0.021 |
| 개인소득 | 0.005 |
| 자산 | 0.073* |

*p<.05

3) 재산비례 벌금제 찬반 이유

아래 <표 2-18>에 의하면 재산비례 벌금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첫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벌금을 선고하면 벌금 미납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47.8%), 둘째 가난한 자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42.9%), 셋째 경제적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동등한 형벌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37.1%), 넷째 법원의 양형에 대한 신뢰 증대(24.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8〉 재산비례 벌금제 찬성 이유 (다중응답, N=804)

| 문 항 | 응답자 수(%) |
|---|-----------|
| ①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벌금을 선고하면 벌금 미납자가 감소할 수 있다 | 384(47.8) |
| ② 경제적 능력의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한 형벌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298(37.1) |
| ③ 가난한 자가 벌금을 내지 못해 다시 교도소/구치소에 구금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345(42.9) |
| ④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법원의 선고형량을 신뢰할 수 있다 | 198(24.6) |
| ⑤ 현재의 사회경제시스템으로 개인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 125(15.5) |

재산비례 벌금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 〈표 2-19〉와 같다. 특히 본 조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빈부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응답이 반대응답자 중 190명으로서 73.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다중응답). 이러한 이유는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재산비례 벌금제의 반대 이유 중 가장 많이 거론된 의견이기도 하다. 특이한 것은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더라도 이 제도가 가난한 자들의 벌금 미납 문제를 여전히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한 응답도 3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다중응답).

〈표 2-19〉 재산비례 벌금제 반대 이유 (다중응답, N=259)

| 문 항 | 응답자 수(%) |
|---|-----------|
| ① 총액벌금제가 재산비례 벌금제보다 문제점이 적기 때문에 | 22(8.5) |
| ② 가난한 자들의 벌금미납 문제를 여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 85(32.8) |
| ③ 동일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빈부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 190(73.4) |
| ④ 고액벌금자의 증가로 오히려 미납 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 42(16.2) |
| ⑤ 현재 국가 시스템이 개인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 44(17.0) |

아래 〈표 2-20〉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성별, 학력, 연령, 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성/반대 이유와의 교차분석 결과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성별, 학력, 연령, 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성/반대 이유와의 관계에서는 별다른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2-20〉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성 이유(다중응답)

| 문항 | 응답자 수(%) | | | | | | | | | | | |
|----|-----------------------------------|---------------|---------------|--------------|---------------|---------------|--------------|---------------|---------------|---------------|---------------|---------------|
| | 성별 | | 학력 | | | | 연령 | | | 벌금 경험 | | |
| | 남 | 여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 대학원졸 이상 | 2-30대 | 4-50대 | 60대 이상 | 있음 | 없음 | |
| 찬성 | ① 벌금 미납률이 감소하므로 | 179 (44.4) | 205 (51.1) | 7 (35.0) | 124 (57.9) | 219 (45.1) | 34 (40.5) | 125 (47.2) | 160 (48.9) | 99 (46.7) | 107 (48.4) | 277 (47.5) |
| | ② 동등한 형벌효과가 발휘되므로 | 164 (40.7) | 134 (33.4) | 7 (35.0) | 63 (29.4) | 188 (38.7) | 40 (47.6) | 117 (44.2) | 122 (37.3) | 59 (27.8) | 74 (33.5) | 224 (38.4) |
| | ③ 가난한 자의 재구금이 방지되므로 | 181 (44.9) | 164 (40.9) | 6 (30.0) | 100 (46.7) | 199 (40.9) | 40 (47.6) | 98 (37.0) | 134 (41.0) | 113 (53.3) | 93 (42.1) | 252 (43.2) |
| | ④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므로 | 104 (25.8) | 94 (23.4) | 7 (35.0) | 38 (17.8) | 132 (27.2) | 21 (25.0) | 60 (22.6) | 90 (27.5) | 48 (22.6) | 54 (24.4) | 144 (24.7) |
| | ⑤ 현 국가시스템으로 시행이 가능하므로 | 56 (13.9) | 69 (17.2) | 4 (20.0) | 38 (17.8) | 72 (14.8) | 11 (13.1) | 36 (13.6) | 60 (18.3) | 29 (13.7) | 25 (11.3) | 100 (17.2) |
| 반대 | ① 현 제도보다 단점이 더 많으므로 | 12 (9.4) | 10 (7.6) | 0 | 8 (10.1) | 12 (7.6) | 2 (10.0) | 4 (4.8) | 8 (7.6) | 10 (14.3) | 8 (10.3) | 14 (7.7) |
| | ② 가난한 자들의 벌금 미납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 46 (35.9) | 39 (29.8) | 0 | 32 (40.5) | 47 (29.7) | 6 (30.0) | 29 (34.5) | 33 (31.4) | 23 (32.9) | 26 (33.3) | 59 (32.6) |
| | ③ 동일범죄에 대한 처벌이 빈부차이에 따라 다르면 부당하므로 | 87 (68.0) | 103 (78.6) | 2 (100.0) | 48 (60.8) | 122 (77.2) | 18 (90.0) | 59 (70.2) | 76 (72.4) | 55 (78.6) | 55 (70.5) | 135 (74.6) |
| | ④ 고액 벌금자가 증가해 오히려 총 미납액이 증가하므로 | 22 (17.2) | 20 (15.3) | 0 | 14 (17.7) | 25 (15.8) | 3 (15.0) | 14 (16.7) | 18 (17.1) | 10 (14.3) | 13 (16.7) | 29 (16.0) |
| | ⑤ 현 국가 시스템으로 시행이 불가능함 | 21 (16.4) | 23 (17.6) | 0 | 17 (21.5) | 23 (14.6) | 4 (20.0) | 17 (20.2) | 18 (17.1) | 9 (12.9) | 15 (19.2) | 29 (16.0) |

바. 재산비례 벌금제 시행 시기 및 시행 방법

1) 시행 시기

아래 〈표 2-21〉에 의하면 재산비례 벌금제가 도입될 경우 그 시행은 우선 지금부터 일부 지역이나 일부 범죄영역에서 시범으로라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464명인 43.7%이며 그 다음으로 1~2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249명인 23.4%로 나타났

다. 전체 응답자의 67.1%가 최소 1~2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임을 알 수 있다. 벌금선고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 보다는 1~2년 이내에 시행하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지금 당장 시행하거나 1~2년 이내에 시행하자는 의견을 합친 경우에는 전체의견의 비율과 비슷한 수치인 66.5%가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21〉 재산비례 벌금제 시행 시기

| 문 항 | 응답자 수(%) | |
|--------------------------------|------------|-----------------|
| | 전체(n=1063) | 벌금선고 경험자(n=299) |
| ① 지금부터라도 일부 지역이나 범죄 분야에서 시범 실시 | 464(43.7) | 120(40.1) |
| ② 1-2년 이내 | 249(23.4) | 79(26.4) |
| ③ 3-5년 이내 | 170(16.0) | 50(16.7) |
| ④ 10년 이내 | 43(4.0) | 7(2.3) |
| ⑤ 10년 이후 | 137(12.9) | 43(14.4) |

2) 시행 방법

아래 〈표 2-22〉에 의하면 재산비례 벌금제 시행 방법으로는 우선 특정 지역이나 범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495명인 46.6%이며, 그 다음으로 411명인 38.7%는 전면적인 시범 실시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906명인 85.3%로 나타나 조사참여자의 대부분은 시범 실시를 해보고 이후 다시 점검해보자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벌금선고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 시범실시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조사 참여자 응답의 비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전체: 85.3%, 벌금선고 경험자: 86.6%). 특히 벌금선고 경험자의 경우, 일부 범죄나 특정 지역에 한정지어 시범실시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시범실시 이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았다(전체: 38.7%, 벌금선고경험자: 43.1%).

〈표 2-22〉 재산비례 벌금제 시행 방법

| 문 항 | 응답자 수(%) | |
|---------------------------------------|------------|-----------------|
| | 전체(n=1063) | 벌금선고 경험자(n=299) |
| ① 특정 지역이나 일부 범죄에 대하여 제한적이라도 시범 실시한 이후 | 495(46.6) | 130(43.5) |
| ② 전체적으로 시범 실시 한 이후 | 411(38.7) | 129(43.1) |
| ③ 시범 실시 기간 없이 공표하고 바로 시행 | 141(13.3) | 33(11.0) |
| ④ 기타 | 16(1.5) | 7(2.3) |

사. 개인의 소득 및 재산상황 파악을 위한 시스템 정비 관련

현재 개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파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소득세, 재산세 자료 등으로 가능하다. 재산비례 벌금제가 도입된다면 피고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파악자료는 재산비례 벌금제의 산정 기초자료가 된다. 재산비례 벌금제의 도입 여부에 대한 반대 의견 중 현재 개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파악을 위한 위 자료로는 불충분하며, 재산 등의 파악을 위한 인프라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즉 시기상조론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조사에서 일반인은 현행 소득 및 재산상태의 파악 시스템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로 하였다. 아래 〈표 2-23〉에 의하면 현행 시스템이 비교적 적절하다는 의견이 636명인 59.8%이며,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136명인 12.8%로서 적절한 편이라고 보는 의견이 772명인 72.6%에 이른다.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은 227명인 21.4%로 나타났다.

〈표 2-23〉 현행 소득 및 재산상태 파악 시스템에 대한 의견

| 문 항 | 응답자 수(%) |
|------------------|-----------|
| ① 매우 적절하다 | 136(12.8) |
| ② 비교적 적절한 편이다 | 636(59.8) |
| ③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227(21.4) |
|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 64(6.0) |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성별, 학력, 연령, 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성/반대 이유와의 교차분석 결과, 벌금선고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적절하다는 비율이 전체와 동일하게 72.6%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24).

〈표 2-24〉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현행 소득 및 재산상태 파악 시스템에 대한 의견

| 문항 | 응답자 수(%) | | | | | | | | | | |
|------------------|---------------|---------------|--------------|---------------|---------------|--------------|---------------|---------------|---------------|---------------|---------------|
| | 성별 | | 학력 | | | | 연령 | | | 벌금 경험 | |
| | 남 | 여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 대학원졸 이상 | 2-30대 | 4-50대 | 60대 이상 | 있음 | 없음 |
| ① 매우 적절하다 | 77 (14.5) | 59 (11.1) | 3 (13.6) | 41 (14.0) | 79 (12.3) | 13 (12.5) | 43 (12.3) | 68 (15.7) | 25 (8.9) | 41 (13.7) | 95 (12.4) |
| ② 비교적 적절한 편이다 | 332 (62.6) | 304 (57.1) | 12 (54.6) | 171 (58.3) | 388 (60.2) | 65 (62.5) | 207 (59.4) | 244 (56.5) | 185 (65.6) | 176 (58.9) | 460 (60.2) |
| ③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91 (17.1) | 136 (25.6) | 5 (22.7) | 60 (20.5) | 147 (22.8) | 15 (14.4) | 80 (22.9) | 93 (21.5) | 54 (19.1) | 62 (20.7) | 165 (21.6) |
|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 31 (5.8) | 33 (6.2) | 2 (9.1) | 21 (7.2) | 30 (4.7) | 11 (10.6) | 19 (5.4) | 27 (6.3) | 18 (6.4) | 20 (6.7) | 44 (5.8) |

아. 재산비례 벌금제의 예상효과

아래 〈표 2-25〉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이후 예상효과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벌금형에 대한 사법 불신 감소(71%), 경제적 약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감소(71.5%), 부자들에 대한 형벌효과 증대(72.9%)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가적으로 국고 수입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 응답률도 65.2%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및 재산은닉행위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74.6%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비례 벌금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25〉 재산비례 벌금제의 예상효과(다중응답)

| 문항 | 응답자 수(%)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①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므로 벌금형의 사법적 불평등 문제가 감소할 것이다 | 82 (7.7) | 226 (21.3) | 658 (61.9) | 97 (9.1) |
| ② 경제적 약자의 노역장유치가 감소할 것이다 | 51 (4.8) | 252 (23.7) | 631 (59.4) | 129 (12.1) |
| ③ 동일범죄에 대한 벌금액의 차이로 형벌의 불평등한 외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 64 (6.0) | 356 (33.5) | 520 (48.9) | 123 (11.6) |
| ④ 벌금 미납률이 감소할 것이다 | 66 (6.2) | 310 (29.2) | 585 (55.0) | 102 (9.6) |
| ⑤ 부자들에 대한 형벌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 59 (5.6) | 229 (21.5) | 499 (46.9) | 276 (26.0) |

| 문항 | 응답자 수(%)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⑥ 사법부의 신뢰가 증가할 것이다 | 101 (9.5) | 355* (33.4) | 498 (46.8) | 109 (10.3) |
| ⑦ 소득 및 재산의 은닉행위가 증가할 것이다 | 37 (3.5) | 233 (21.9) | 520 (48.9) | 273 (25.7) |
| ⑧ 고액벌금자의 납부 증가로 국가수입이 증대될 것이다 | 74 (7.0) | 296 (27.8) | 584 (54.9) | 109 (10.3) |

아래 <표 2-26>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성별, 학력, 연령, 벌금경험 여부)에 따른 재산비례 벌금제의 예상효과와의 교차분석 결과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성별, 학력, 연령, 벌금경험 여부)에 따른 재산비례 벌금제의 예상효과와의 관계에서는 별다른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2-26>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예상효과에 대한 의견

| 문항 | | 응답자 수(%) | | | | | | | | | | |
|----------------------------|-----------|---------------|---------------|--------------|---------------|---------------|--------------|---------------|---------------|---------------|---------------|---------------|
| | | 성별 | | 학력 | | | | 연령 | | | 벌금 경험 | |
| | | 남 | 여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 대학원졸 이상 | 2-30대 | 4-50대 | 60대 이상 | 있음 | 없음 |
| ① 벌금형의 사법적 불평등 문제가 감소할 것이다 | 매우 그렇다 | 60 (11.3) | 37 (7.0) | 3 (13.6) | 29 (9.9) | 56 (8.7) | 9 (8.7) | 34 (9.7) | 39 (9.0) | 24 (8.5) | 30 (10.0) | 67 (8.8) |
| | 그렇다 | 321 (60.5) | 337 (63.3) | 11 (50.0) | 185 (63.1) | 390 (60.5) | 72 (69.2) | 212 (60.7) | 274 (63.4) | 172 (61.0) | 170 (56.9) | 488 (63.8) |
| | 그렇지 않다 | 101 (19.0) | 125 (23.5) | 4 (18.2) | 62 (21.2) | 144 (22.4) | 16 (15.4) | 69 (19.9) | 91 (21.1) | 66 (23.4) | 71 (23.7) | 155 (20.3) |
| | 전혀 그렇지 않다 | 49 (9.2) | 33 (6.2) | 4 (18.2) | 17 (5.8) | 54 (8.4) | 7 (6.7) | 34 (9.7) | 28 (6.5) | 20 (7.1) | 28 (9.4) | 54 (7.1) |
| ② 경제적 약자의 노역장유치가 감소할 것이다 | 매우 그렇다 | 75 (14.1) | 54 (10.2) | 3 (13.6) | 35 (11.9) | 80 (12.4) | 11 (10.6) | 39 (11.2) | 53 (12.3) | 37 (13.1) | 39 (13.0) | 90 (11.8) |
| | 그렇다 | 290 (54.6) | 341 (64.0) | 10 (45.5) | 183 (62.5) | 369 (57.3) | 69 (66.3) | 206 (59.0) | 255 (59.0) | 170 (60.3) | 170 (56.9) | 461 (60.3) |
| | 그렇지 않다 | 135 (25.5) | 117 (22.0) | 6 (27.3) | 62 (21.2) | 163 (25.3) | 21 (20.2) | 84 (24.1) | 105 (24.3) | 63 (22.3) | 72 (24.1) | 180 (23.6) |
| | 전혀 그렇지 않다 | 31 (5.8) | 20 (3.8) | 3 (13.6) | 13 (4.4) | 32 (5.0) | 3 (2.9) | 20 (5.7) | 19 (4.4) | 12 (4.3) | 18 (6.0) | 33 (4.3) |
| ③ 형벌의 불평등한 외관을 조장할 것이다 | 매우 그렇다 | 55 (10.4) | 68 (12.8) | 2 (9.1) | 39 (13.3) | 69 (10.7) | 13 (12.5) | 48 (13.8) | 49 (11.3) | 26 (9.2) | 38 (12.7) | 85 (11.1) |
| | 그렇다 | 251 (47.2) | 269 (50.6) | 11 (50.0) | 135 (46.1) | 322 (50.0) | 52 (50.0) | 182 (52.1) | 201 (46.5) | 137 (48.6) | 143 (47.8) | 377 (49.4) |
| | 그렇지 않다 | 192 (36.2) | 164 (30.8) | 7 (31.8) | 100 (34.1) | 214 (33.2) | 35 (33.7) | 104 (29.8) | 152 (35.3) | 100 (35.5) | 99 (33.1) | 257 (33.6) |
| | 전혀 그렇지 않다 | 33 (6.2) | 31 (5.8) | 2 (9.1) | 19 (6.5) | 39 (6.1) | 4 (3.8) | 15 (4.3) | 30 (6.9) | 19 (6.7) | 19 (6.4) | 45 (5.9) |

| 문항 | | 응답자 수(%) | | | | | | | | | | |
|--------------------------------|-----------|---------------|---------------|--------------|---------------|---------------|--------------|---------------|---------------|---------------|---------------|---------------|
| | | 성별 | | 학력 | | | | 연령 | | | 벌금 경험 | |
| | | 남 | 여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 대학원졸 이상 | 2-30대 | 4-50대 | 60대 이상 | 있음 | 없음 |
| ④ 벌금 미납률이 감소할 것이다 | 매우 그렇다 | 53 (10.0) | 49 (9.2) | 1 (4.5) | 32 (10.9) | 51 (7.9) | 18 (17.3) | 33 (9.5) | 40 (9.3) | 29 (10.3) | 31 (10.4) | 71 (9.3) |
| | 그렇다 | 292 (55.0) | 293 (55.1) | 13 (59.1) | 180 (61.5) | 342 (53.1) | 50 (48.1) | 187 (53.6) | 243 (56.2) | 155 (55.0) | 155 (51.8) | 430 (56.3) |
| | 그렇지 않다 | 150 (28.2) | 160 (30.1) | 5 (22.8) | 63 (21.5) | 211 (32.8) | 31 (29.8) | 101 (28.9) | 124 (28.7) | 85 (30.1) | 92 (30.8) | 218 (28.5) |
| | 전혀 그렇지 않다 | 36 (6.8) | 30 (5.6) | 3 (13.6) | 18 (6.1) | 40 (6.2) | 5 (4.8) | 28 (8.0) | 25 (5.8) | 13 (4.6) | 21 (7.0) | 45 (5.9) |
| ⑤ 부자들에 대한 형벌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 매우 그렇다 | 146 (27.5) | 130 (24.4) | 2 (9.1) | 80 (27.3) | 162 (25.2) | 32 (30.8) | 91 (26.1) | 110 (25.5) | 75 (26.6) | 75 (25.1) | 201 (26.3) |
| | 그렇다 | 257 (48.4) | 242 (45.6) | 13 (59.1) | 128 (43.7) | 306 (47.4) | 52 (50.0) | 149 (42.6) | 210 (48.6) | 140 (49.7) | 144 (48.2) | 355 (46.5) |
| | 그렇지 않다 | 99 (18.6) | 130 (24.4) | 4 (18.2) | 71 (24.2) | 137 (21.3) | 17 (16.3) | 85 (24.4) | 87 (20.1) | 57 (20.2) | 56 (18.7) | 173 (22.6) |
| | 전혀 그렇지 않다 | 29 (5.5) | 30 (5.6) | 3 (13.6) | 14 (4.8) | 39 (6.1) | 3 (2.9) | 24 (6.9) | 25 (5.8) | 10 (3.5) | 24 (8.0) | 35 (4.6) |
| ⑥ 사법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 | 매우 그렇다 | 60 (11.3) | 49 (9.2) | 4 (18.2) | 33 (11.3) | 63 (9.8) | 9 (8.7) | 31 (8.9) | 45 (10.4) | 33 (11.7) | 33 (11.0) | 76 (9.9) |
| | 그렇다 | 263 (49.5) | 235 (44.2) | 8 (36.4) | 136 (46.4) | 296 (46.0) | 58 (55.8) | 153 (43.8) | 209 (48.4) | 136 (48.2) | 132 (44.1) | 366 (47.9) |
| | 그렇지 않다 | 148 (27.9) | 207 (38.9) | 7 (31.8) | 101 (34.5) | 218 (33.8) | 29 (27.8) | 121 (34.7) | 145 (33.6) | 89 (31.6) | 100 (33.5) | 255 (33.4) |
| | 전혀 그렇지 않다 | 60 (11.3) | 41 (7.7) | 3 (13.6) | 23 (7.8) | 67 (10.4) | 8 (7.7) | 44 (12.6) | 33 (7.6) | 24 (8.5) | 34 (11.4) | 67 (8.8) |
| ⑦ 소득 및 재산은닉이 증가할 것이다 | 매우 그렇다 | 118 (22.2) | 155 (29.1) | 7 (31.8) | 87 (29.7) | 155 (24.1) | 24 (23.1) | 114 (32.7) | 98 (22.7) | 61 (21.6) | 81 (27.1) | 192 (25.1) |
| | 그렇다 | 262 (49.3) | 258 (48.5) | 9 (40.9) | 147 (50.2) | 308 (47.8) | 56 (53.8) | 152 (43.5) | 219 (50.7) | 149 (52.8) | 141 (47.2) | 379 (49.6) |
| | 그렇지 않다 | 130 (24.5) | 103 (19.4) | 5 (22.8) | 52 (17.7) | 153 (23.8) | 23 (22.1) | 72 (20.6) | 101 (23.4) | 60 (21.3) | 65 (21.7) | 168 (22.0) |
| | 전혀 그렇지 않다 | 21 (4.0) | 16 (3.0) | 1 (4.5) | 7 (2.4) | 28 (4.3) | 1 (1.0) | 11 (3.2) | 14 (3.2) | 12 (4.3) | 12 (4.0) | 25 (3.3) |
| ⑧ 고액벌금자의 납부 증가로 국가 수입이 증대될 것이다 | 매우 그렇다 | 52 (9.8) | 57 (10.7) | 2 (9.1) | 35 (11.9) | 62 (9.6) | 10 (9.6) | 32 (9.2) | 48 (11.1) | 29 (10.3) | 35 (11.7) | 74 (9.7) |
| | 그렇다 | 306 (57.6) | 278 (52.3) | 7 (31.8) | 162 (55.4) | 349 (54.2) | 66 (63.5) | 190 (54.4) | 234 (54.2) | 160 (56.7) | 160 (53.5) | 424 (55.5) |
| | 그렇지 않다 | 138 (26.0) | 158 (29.7) | 11 (50.0) | 76 (25.9) | 185 (28.7) | 24 (23.1) | 94 (26.9) | 122 (28.2) | 80 (28.4) | 76 (25.4) | 220 (28.8) |
| | 전혀 그렇지 않다 | 35 (6.6) | 39 (7.3) | 2 (9.1) | 20 (6.8) | 48 (7.5) | 4 (3.8) | 33 (9.5) | 28 (6.5) | 13 (4.6) | 28 (9.4) | 46 (6.0) |

자. 재산비례 벌금제의 산정기준

이 조사항목은 재산비례 벌금제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항이다. 아래 <표 2-27>에 의하면 본인 소득만을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13.7%, 본인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2.4%, 본인 및 가족의 소득과 재산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28.9%였다. 정리하면 본인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총 56.1%로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벌금액 산정의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2-27> 재산비례 벌금제의 산정기준

| 문항 | 응답자 수(%) |
|-------------------------|-----------|
| ① 본인 소득 | 146(13.7) |
| ② 본인 소득과 재산 | 451(42.4) |
| ③ 가족의 기초생활비를 제외한 소득과 재산 | 147(13.8) |
| ④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 | 307(28.9) |
| ⑤ 기타 | 12(1.1) |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성별, 학력, 연령, 벌금경험 여부)에 따른 재산비례 벌금제의 벌금액 산정 기준과의 관계를 교차분석으로 확인해보았다(표 2-28). 벌금경험이 있는 조사 참여자의 경우에 전체 조사 참여자의 응답 비율과 조금은 다르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다. 전체의 경우에는 본인 소득과 재산을 산정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42.4%였던 반면, 벌금선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46.2%가 이에 동의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표 2-28>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산정기준

| 문항 | 응답자 수(%) | | | | | | | | | | |
|-------------|---------------|---------------|--------------|---------------|---------------|--------------|---------------|---------------|---------------|---------------|---------------|
| | 성별 | | 학력 | | | | 연령 | | | 벌금 경험 | |
| | 남 | 여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 대학원졸 이상 | 2-30대 | 4-50대 | 60대 이상 | 있음 | 없음 |
| ① 본인 소득 | 72 (13.6) | 74 (13.9) | 6 (27.3) | 41 (14.0) | 85 (13.2) | 14 (13.5) | 40 (11.5) | 58 (13.4) | 48 (17.0) | 39 (13.0) | 107 (14.0) |
| ② 본인 소득과 재산 | 247 (46.5) | 204 (38.4) | 10 (45.4) | 121 (41.3) | 285 (44.3) | 35 (33.6) | 165 (47.3) | 170 (39.4) | 116 (41.1) | 138 (46.2) | 313 (41.0) |

| 문항 | 응답자 수(%) | | | | | | | | | | |
|-------------------------|---------------|---------------|-------------|--------------|---------------|--------------|--------------|---------------|--------------|--------------|---------------|
| | 성별 | | 학력 | | | | 연령 | | | 벌금 경험 | |
| | 남 | 여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 대학원졸 이상 | 2-30대 | 4-50대 | 60대 이상 | 있음 | 없음 |
| ③ 가족의 기초생활비를 제외한 소득과 재산 | 63 (11.9) | 84 (15.8) | 2 (9.1) | 54 (18.4) | 77 (12.0) | 14 (13.5) | 45 (12.9) | 71 (16.4) | 31 (11.0) | 35 (11.7) | 112 (14.6) |
| ④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 | 142 (26.7) | 165 (31.0) | 4 (18.2) | 75 (25.6) | 189 (29.3) | 39 (37.5) | 95 (27.2) | 128 (29.6) | 84 (29.8) | 84 (28.1) | 223 (29.2) |
| ⑤ 기타 | 7 (1.3) | 5 (0.9) | 0 | 2 (0.7) | 8 (1.2) | 2 (1.9) | 4 (1.1) | 5 (1.2) | 3 (1.1) | 3 (1.0) | 9 (1.2) |

3. 소결

전국민을 모집단으로 여러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비례하여 할당배분하여 수집된 1천여명의 표본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약 75.6%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나 벌금형 성별, 학력, 연령, 소득 수준, 그리고 벌금형 선고 경험 유무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인식임을 보여준다.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75.6%로 나타난 것은 이 제도가 일반인들로부터 어느 정도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반대 의견은 동일 행위에 대하여 다른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형벌 평등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 도입 찬반의 견은 벌금형의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보이지 않았다.

현행 소득 및 재산상태의 파악시스템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도 현행 시스템이 적절한 편이라고 보는 의견이 772명인 72.6%에 이르고 있음은 시사하고 있는 바가 매우 크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의 시기상조론이나 현실성 결여 등의 논거가 더이상 자리하기 어려워, 제도 시행을 위한 저변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재산비례 벌금제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1~2년 이내에 특정지역이든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범 실시해 보자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5.3%로 나타나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국민의 대다수는 시범 실시를 하고 이후 다시 점검해보자는 의견을 갖고 있다.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이후의 예상효과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대한 사법불신 감소(71%), 경제적 약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감소(71.5%), 부자들에 대한 형벌효과 증대(72.9%)로 긍정

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소득 및 재산은닉행위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7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산비례 벌금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재산비례 벌금제로 국고수입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 응답률도 65.2%로 나타나, 세금을 더 걷어가는 수단이 아닌지 의혹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음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시행의 예상효과에 대한 응답은 지역이나 소득 등의 변인과의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조사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성별이나 학력, 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은 벌금형 경험과 제도 인지 여부와 근거 등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서 벌금제에 대한 인지나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일반인들은 기본적으로 벌금형 제도에 대한 인식과 주요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제도인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벌금형 제도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도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만큼 국민들은 사법제도 및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형벌제도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사 분석 결과에서 재산비례 벌금제의 도입 찬반에 대한 응답결과 응답자의 학력이나 소득 등은 제도의 찬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목할 만하다.

Ⅲ.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1. 조사대상 및 방법

가. 조사대상

벌금형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각 대학교의 형사법 교수 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20년 8월 21일부터 9월 1일이었다.

나. 조사방법

전문가집단의 경우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논의가 그 어느 영역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일수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 일수벌금제 도입이 동일한 행위에 대한 불평등한 외관을 야기하고,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다. 본 조사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벌금형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나아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벌금형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본 조사에서는 전문가인 형사법학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현행 벌금형 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개선방안으로서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견을 들어보고자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 배포하였다.⁷⁾ 본 조사 대상인 전문가들은 현행 형벌 제도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이미 선행연구 논문을 통해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 바를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조사방법은 기존의 설문지 형식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이 좋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개방형 질문조사 방법을 택하였다. 조사 대상 전문가들이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면 이후 문항별 의견을 정리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선행 연구 논문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이고도 심도 깊은 논의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벌금형 제도개선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요 조사결과

가. 명칭

본 연구에서 현행 총액벌금형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벌금형 중 하나인 ‘일수벌금제’라는 명칭에 대하여 일반인들에 대한 파일럿 조사과정에서 그 명칭이 쉽게 이해되지 않고 무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일반인 조사설문지를 수정하고 다시 파일럿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비례 벌금제’와 ‘재산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 ‘재산연동 벌금제’ 등 몇 가지 용어를 함께 제시해보았다. 그 결과 일반인들은 ‘재산비례 벌금제’라는 용어의 어미를 가장 쉽게 이해하고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

7) 법무부도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학계 등 전문가의견 수렴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8264), 2019.7. 13-14면.

타냈다. 그리하여 일반인 조사에서 재산비례 벌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일수벌금제, 재산비례 벌금제, 재산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 재산연동 벌금제 등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벌금형 제도 개선방안 명칭에 대하여 통일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향후 입법이나 정책수립에 사용될 용어를 확정하는 것도 입법자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대상으로 어느 명칭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였다. 아래 <표 3-1>에 따르면 총 응답자 38명 중 13명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그다음으로 일수벌금제는 10명이, 재산연동 벌금제는 8명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명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느 한 명칭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반인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의 벌금형을 “재산비례 벌금제”로 사용하기로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수벌금제를 같이 사용한다.

<표 3-1> 소위 일수벌금제 명칭의 적정성 여하

| 명 칭 | 응답자 수(%) | 내 용 |
|-------------------|----------|--|
| ① 재산비례 벌금제 | 13(34.2) | 재산비례 벌금제 10명, 재산·소득비례 벌금제 2명, 소득비례 벌금제 1명 |
| ② 일수벌금제 | 10(26.3) | - |
| ③ 재산연동 벌금제 | 8(21.1) | 재산연동 벌금제 7명, 재산·소득연동 벌금제 1명 |
| ④ 재산·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 | 3(7.9) | 재산·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 2명, 차등벌금제 1명 |
| ⑤ 기타 | 4(10.5) | 일수벌금제 및 재산비례 벌금제 병행 사용 1명, 차이벌금제 1명, 제시 안함 2명 |

나.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반 여부

아래 <표 3-2>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반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다.

〈표 3-2〉 재산비례 벌금제 찬반 여부

| 문항 | 응답자 수(%) |
|------------|----------|
| ① 일수벌금제 찬성 | 30(78.9) |
| ② 일수벌금제 반대 | 7(18.4) |
| ③ 기타 | 1(2.6) |

전문가집단의 경우 일수벌금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총 39명 중 찬성 31명, 유보 1명, 반대 7명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응답에서 형벌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내지 형벌효과의 균등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 아래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벌효과성을 압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3〉 벌금형의 주요가치

| 문항 | 응답자 수(%) |
|---------|----------|
| ① 형벌평등성 | 5(13.2) |
| ② 형벌효과성 | 33(86.8) |

다. 현행 벌금제의 문제점

현행 벌금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경제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등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형벌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형벌효과가 문제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다. 응답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형벌의 효과 측면에서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형의 위하력 강화,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가 동일한 형벌효과 내지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일수벌금제에 찬성하는 견해는 현행 총액벌금제가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 모두 동일한 벌금액이 부과됨으로써 부자에 대한 적절한 형벌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범죄행위의 피해액이나 이득액에 비해 부과되는 벌금액수가 지나치게 낮으며, 이로 인해 처벌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한편, 처벌을 경시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사법신뢰를 저하시킨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전문가 조사에서 일수벌금제 찬성의견은 현행 총액벌금제가 갖는 단점인 경제능력에 따른 형벌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고 형벌의

위하력을 높이고 개별적·차등적 양형으로 예방효과를 거두는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벌금형의 문제를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집행력 미흡으로 보고 강제집행권 확보와 재산은닉 방지, 납부의무자의 소재파악 및 형집행장 집행, 검찰인력 부족과 벌금집행 업무상의 기관 상호 간 협조 미흡 등의 문제로 보고 집행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6명). 일수벌금제 반대의견 가운데에도 벌금집행력 문제를 중심으로 집행력 확보를 위한 강제납부제도나 대체납부제도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1명)이 있다.

재산비례 벌금제에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응답을 살펴보면(중복응답),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6명, 경제력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벌금형도 그 고통은 개인마다 다를 것이고, 일수벌금형 부과로 오히려 재산은닉을 유도한다는 응답이 각각 1명이며, 재산비례 벌금제가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고 인기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2명이었다. 어디까지를 개인소득과 재산으로 보아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을 피력한 응답자도 4명이다. 한편 소득과 재산파악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은 2명이다. 현행 총액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적정한 공소권 행사와 양형재량권 행사로 벌금형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은 1명이다.

라. 개인의 소득 및 재산파악 가능 여부

전문가 의견 중 다수는 현재 관련 기관의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일수벌금제의 도입을 위한 권고에 대해서는 18명이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기관(국세청, 관세청,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법원에 의해 객관적인 기준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명, 도입 전에 유럽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의견을 보면 ① 법원 전문조사관을 설치하여 피고인 포함 가족 및 배우자의 재산·소득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의견이 4명, ② 수사단계에서부터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재산조사 및 압류 2명, ③ 법원의 자료제출 요청권 1명, ④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 1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개인소득 및 재산상황 파악을 위해 재산은닉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할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5명이다. 이 경우 집행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1명 있다.

마. 벌금 미납 대체방안

벌금 미납 대체방안으로는 벌금 분납과 사회봉사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행정적 불이익 예컨대 취업제한이나 운전면허 취소 1명, 월급차압 3명이 의견을 주었다. 벌금형의 집행력 확보를 최우선시하면서 집행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서 특히 고액벌금미납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2명이 응답해주었다. 노역장유치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 가운데 노역장유치를 폐지하자는 의견(1명)과 대체자유형을 도입하자는 의견(3명)이 있다.

바. 시행 방법 및 시행 시기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시 재산비례 벌금제 대상범죄를 재산범죄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11명이며, 재산범죄에 더하여 경제범죄, 환경범죄, 마약범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4명, 2명이다.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된 모든 범죄에 재산비례 벌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명이며, 그 외 과실범을 대상으로 하자고 응답한 경우도 2명이 있다. 범죄자 유형을 소득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소득이나 고액 자산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은 1명이다.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시 시행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는 재산 등 파악시스템 구축이 완비될 때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5명)과 일반인이 납득 가능할 때와 경제사회 인프라와 과세불평등 해소 이후 국민 공감대 형성 후 실시하자는 응답은 각각 1명이다.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시범 실시 후 확대하자는 의견은 9명이며, 1~2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재산상태 파악을 위한 관련 기관의 정보공유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2명, 제도홍보 등을 이유로 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명, 3-5년 준비 후 1년 정도 시범시행 후라고 응답한 경우는 1명이다.

모든 범죄에 즉시 시행하자는 의견은 3명이다. 시행시기로서 2021년이나 2022년으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해준 응답도 각각 1명이 있다. 죄명으로 제한하여 재산범죄를 먼저 시범 실시 후 전면시행하자는 의견(1)도 있다.

사. 일수정액 산정기준

일수정액 산정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상황에 따라 일수와 정액을 정하자는 방안을 6명이

응답해주었으며, 특히 법원에서 양형위원회 등을 통해 양형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15명이 응답해주었다. 일수에 대한 상한에 대한 의견을 준 경우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노역장유치 기간 3년을 감안하여 최대 3년으로 일수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별도의 양형기준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명이 제시해주었다. 일수정액을 정할 때 상·하한 사이의 편차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1명).

아. 일반인 및 전문가 집단별 재산비례 벌금제의 예상효과

아래 <표 3-4>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이후 예상효과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통계치는 Chi-square 검증으로 응답을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그렇다’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재코딩한 후 2x2 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므로 벌금형의 사법적 불평등 문제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문항에서 일반인들은 1063명 중 755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38명 중 31명이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재산비례 벌금제가 사법적 불평등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았다($\chi^2 = 47.6423^{***}$). 또한 ‘경제적 약자의 노역장유치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문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chi^2 = 35.6187^{***}$)에서 일반인은 ‘그렇지 않다’고 예상한 반면,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보아 재산비례 벌금제의 효과에 대한 일반인 - 전문가 간 시각 차이가 나타났다. 결국, ③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벌금 미납율이 감소할 것이다($\chi^2 = 6.2962^{**}$)’, ‘부자들에 대한 형벌효과가 높아질 것이다($\chi^2 = 48.0268^*$)’,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 것이다($\chi^2 = 6.1245^{**}$)’, ‘소득 및 재산의 은닉행위가 증가할 것이다($\chi^2 = 7.1183^*$)’, ‘고액벌금자의 납부증가로 국가수입이 증대될 것이다($\chi^2 = 27.3572^{***}$)’의 문항에서 일반인들은 대부분 그 효과를 부정하고,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③번 문항인 ‘동일범죄에 대한 벌금액의 차이로 형벌의 불평등한 외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에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모두 ‘그렇지 않다’고 응답비율이 높아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전문가집단의 경우 재산비례 벌금제 찬성과 반대에 따른 응답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따라 ‘벌금 미납률이 감소할 것이다’, ‘사법부의 신뢰가 증가할 것이다’의 경우 모두 ‘그렇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으나, 표본수가 너무 적어서 유의미한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제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수벌금제 찬반과의

교차분석을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χ^2 s = .728(p=.728), 2.70(p=.101).

〈표 3-4〉 집단별 일수벌금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판단

| 구분 |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전체%(n) | (df), χ^2 |
|--|-----|-------|-------|-----------|----------------------|
| ①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므로 벌금형의 사법적 불평등 문제가 감소할 것이다 | 일반인 | 29.0% | 71.0% | 100(1063) | df=1, |
| | 전문가 | 81.6% | 18.4% | 100(38) | 47.642*** |
| ② 경제적 약자의 노력장유치가 감소할 것이다 | 일반인 | 28.5% | 71.5% | 100(1063) | df=1, |
| | 전문가 | 73.7% | 26.3% | 100(38) | χ^2 =35.619*** |
| ③ 동일범죄에 대한 벌금액의 차이로 형벌의 불평등한 외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 일반인 | 39.5% | 60.5% | 100(1063) | df=1, |
| | 전문가 | 31.6% | 68.4% | 100(38) | χ^2 =0.968 |
| ④ 벌금 미납율이 감소할 것이다 | 일반인 | 35.4% | 64.6% | 100(1063) | df=1, |
| | 전문가 | 55.3% | 44.7% | 100(38) | χ^2 = 6.296** |
| ⑤ 부자들에게 대한 형벌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 일반인 | 27.1% | 72.9% | 100(1063) | df=1, |
| | 전문가 | 78.9% | 21.1% | 100(38) | χ^2 =48.027*** |
| ⑥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 것이다 | 일반인 | 42.9% | 57.1% | 100(1063) | df=1, |
| | 전문가 | 63.2% | 36.8% | 100(38) | χ^2 =6.125** |
| ⑦ 소득 및 재산의 은닉행위가 증가할 것이다 | 일반인 | 25.4% | 74.6% | 100(1063) | df=1, |
| | 전문가 | 44.7% | 55.3% | 100(38) | χ^2 = 7.118** |
| ⑧ 고액벌금자의 납부증가로 국가수입이 증대될 것이다 | 일반인 | 34.8% | 65.2% | 100(1063) | df=1, |
| | 전문가 | 76.3% | 23.7% | 100(38) | χ^2 = 27.357*** |

p<.01, *<.001

IV. 결 론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논의에서 개인의 소득 및 재산상황 파악은 가능하지 않으며 시기상조라고 하는 이유로 더 이상 제도 개혁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이 바라보는 평가와 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하면 재산 등 조사 불가능이라는 이유보다는 오히려 법원의 조사업무의 안정성확보나 관련 행정기관 예컨대 금융기관 및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업무협조 구축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18대 국회에서 일수벌금제도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당시 법무부는 경제적 사정 파악과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서 금융기관 및 국세청, 건

강보험공단 등 국가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선행된다면 일수벌금제 도입에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⁸⁾

재산비례 벌금제의 타당성이나 법관의 벌금형 산정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파악을 위한 건강보험자료와 조세징수자료 등의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 개인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이 전제되지 못하면 피고인간에 불평등이 극대화할 수 있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벌금형이 달라지면 책임주의 원칙에 대한 위배 논란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⁹⁾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경우 일수벌금제 도입 이후 40년이 경과한 시점에 그 성과를 평가해본 결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중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일수벌금제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저소득층의 경우에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⁰⁾

이번 일반국민 조사 결과 재산비례 벌금제 반대의견중 동일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빈부의 차이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 응답(다중응답)이 73.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더라도 이 제도가 가난한 자들의 벌금 미납 문제를 여전히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한 응답도 3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개인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이 전제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능력의 차이에 따라 그 납부가 결정되고 이 때문에 사법불평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형벌의 위하력 보다는 벌금 미납을 초래하여 대체형벌로의 대체라는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¹¹⁾ 그럼에도 전문가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산비례 벌금형은 분명 현행 총액벌금제가 갖는 문제점을 해소해줄 수 있는 제도로서 기대를 모으는 제도일 수는 있다. 이번 일반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는 의견이 72.6%에 이르고 있고, 시행 시기와 방법에서도 1~2년 이내에 특정지역이든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범 실시해 보자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5.3%로 나타났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8) 법무부,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 2010년 1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일수벌금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806178호), 2010.4, 6면 참조

9) 국회 제337회(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5호(2015. 11. 24.), 51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박완주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5935호), 2013.7.10., 6면.

10) Firank Wilde, Frank Wilde, Die Geldstrafe—ein unsoziales Rechtsinstitut, Monatsschrift für Kriminologie und Strafrechtsreform 98(4) 2015.8, 348-364면.

11) 영국은 벌금미납률 증가와 보호관찰·사회봉사 대체명령의 집행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1991년 단위벌금제를 도입하였으나, 동일 범죄에 대하여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의 편차가 너무 큰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폐지하게 되었다. David Moxon, Mike Sutton and Carol Hedderman, Unit Fines: Experiments in Four Courts, Home Office, 1990 참조.



주·제·발·표 2

일수벌금형제도의 정당성과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

최호진 교수

단국대학교 법학과

일수벌금형제도의 정당성과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

최호진 교수

단국대학교 법학과

I. 들어가며

벌금형은 형사실무상 선호되는 형사제재 중 하나이다. 소비사상이 지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벌금형은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은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보다 더 좋은 형사제재를 아직 찾지 못했다. 자유형이 고전적 형벌의 대표적 유형이라면 벌금이나 몰수·추징과 같은 재산형은 근대적 형벌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¹⁾

벌금형은 재산의 손실 및 박탈이라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대 자본경제사회에서는 자유형에 버금가는 일반적 위하력을 가진다. 또한 벌금형은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중단없이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자유형에 비하여 인도적 형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형자를 구금하지 않기 때문에 구금으로 인한 다른 범죄자에 의한 범죄오염 등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수형자를 수용하기 위해 시설을 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²⁾ 벌금으로 인한 국고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더욱이 법관이 오판을 한 경우 그 회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장점이 많은 벌금형은 형사제재로 자주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책임이 동일한 사건에서 행위자의 소득을 고려함이 없이 동일한 벌금액이 부과되는 현행 형법의 총액벌금제에서는³⁾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효

1) 물론 벌금형과 같은 재산형이 근대에 와서 새로이 개발된 것은 아니다. 복수시대가 끝나고 동해보복의 법칙(Lex talionis)에 따라 응보원리가 지배했을 때에는 속죄하는 의미로 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부터 벌금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때의 벌금은 공형벌의 성격이 라기보다는 배상금이나 속죄금의 의미가 더 강했다. 이 경우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분명히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이었으므로 이 당시의 벌금은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2) 손동권, 형법총론, 634면; 임웅, 형법총론, 592면.

3) 현행법상 벌금형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형벌로서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형법 제45조). 이와 같이 행위의 중대성, 죄책, 행위자의 경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상한과 하한의 범위내에서 벌금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총액벌금제라고 한다.

과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의 총액벌금제를 일수벌금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중 하나이다. 또한 벌금형의 납부를 강제함으로써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압력수단인 '노역장유치'의 경우 벌금미납자인 수형자는 일정액 비율로 산정된 기간 동안 자유형과 동일하게 교도소내에서 자유를 박탈되게 된다. 이때 노역장유치는 실질적으로 단기자유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등장한 벌금형이 다시 단기자유형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부자는 자신의 지갑에서 벌금을 지불하고, 가난한 자는 신체로 벌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⁴⁾

이와 같은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일수벌금제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피고인의 책임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함으로써 총액벌금제가 가지는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제도로 자유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느끼는 고통을 균등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일수벌금형제도의 목적과 그 구체적 시행방법은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2단계로 나누어 행해지게 된다. 제1단계에서는 법관이 양형의 일반원칙, 즉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필요성, 범죄의 심각성, 범죄자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일수를 결정하고, 제2단계에서는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1일의 벌금액, 즉 일수정액을 결정한다.

일수벌금제도는 벌금의 부과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일반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 일수정액의 산정이 경제적 능력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빈부 차이에 관계없이 평등한 형벌의 효과를 달성함으로써 공정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 노역장유치가 줄어들어 대체자유형의 집행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벌금 미납시 환형 유치에 대한 기준을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도적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현행 총액벌금제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한 후 일수벌금제의 도입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한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대하여 일부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이 입장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을 한 후 제도도입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한다. 제도 도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4) 김재중, 형벌제도 개선방안, 한국학술정보, 2008, 140면.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는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

1. 문제제기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벌금형의 집행이 선고의 효과가 범죄인에 한정되지 않고,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벌의 일신전속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을 범죄에 대한 세금으로 생각하는 범죄인⁵⁾이 있는 등 형벌로서의 효과가 범죄인마다 서로 다르다는 단점이 있다.⁶⁾ 또한 재산만을 박탈하게 되어 범죄자의 인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범죄자의 인격에 대한 개선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총액벌금제는 경제적 재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예를 들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경우 월수입이 200만원 정도의 일반적 봉급생활자나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등 경제적 극빈자에게는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되지만 월수입이 많은 경제적 강자에게는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희생동등의 원칙⁷⁾ 또는 배분적정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⁸⁾

총액벌금액의 산정은 주로 범죄사실에 맞추어 결정되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벌금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범죄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수 없어서 경제적 약자에게는 대체자유형의 집행에 의하여 단기자유형으로의 전환을 강제하고,⁹⁾ 경제적 강자에게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¹⁰⁾ 뿐만 아니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결국 노역장유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는 또다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드러내게 된다. 자유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벌금형이 그 미납으로 인하여 다시

5) 특히 기업범죄의 경우 기업들이 사업운영상 필요불가결한 비용으로 간단히 처리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에서 벌금과 과료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도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하며 경비로 처리하고 있다(이정민,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도입방안 연구-, 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1면)

6)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741면.

7) 밀(J.S Mill)은 공평한 과세의 원칙으로서 동등희생의 원칙(equal sacrifice rule)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가 조세부담으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희생이 동일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8) 손동권, 형법총론, 634면; 임웅, 형법총론, 592면; 오영근, 형법총론, 760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650면

9)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장발장은행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들을 돕기위한 이 단체는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직 벌금을 낼 형편이 못되어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는 사업이다(<http://www.jeanvaljeanbank.com>).

10) 김성돈, 형법총론, 752면.

자유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2. 형벌효과의 불평등

총액벌금제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형벌효과의 불평등’이다. 즉 같은 금액의 벌금형이더라도 경제적 약자에게는 매우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는 반면, 경제적 강자에게는 형벌효과가 미흡하거나 형벌효과가 없을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¹¹⁾ 누구에게는 그리 크지 않은 소액의 벌금 때문에 가난한 자는 노역장에 갈 수 있다. 수형자의 출소사유 중 노역종료¹²⁾나 벌금완납¹³⁾은 2015년에는 29,526명이었다가 2019년에는 23,165명으로 대개 23,165명에서 29,526명이 벌금 미납을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되었다.¹⁴⁾ 특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를 수행한 인원을 더한다면 더욱 더 많은 인원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벌금형의 집행은 경제적 약자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총액벌금제는 유독 가난한 자에게 더욱 더 가혹한 형벌이 되고 있다.

총액벌금제도는 양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행위책임만을 양형의 기초로 삼기 때문에 행위자의 경제력을 고려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형벌이 갖는 효과는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매우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총액벌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미 실무에서는 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고 있다.¹⁵⁾ 1992년 형법개정안에서는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입법되지는 못했다.¹⁶⁾ 그러나 2011년 3월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40조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벌금, 구류 4가지 형으로 간단히 하였으며, 개정 법률안 제46조 제3항(양형의 원칙)에서 벌금액은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개정안 모두 통과되지 못하였다.

11) 서보학, 벌금형제도 소고: 비판과 입법론적 대안, 형사정책 제10호, 1998, 76면.

12) 출소사유 중 노역종료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미납하여 노역자에 유치되었다가 벌금 환산일수를 모두 복역하고 출소를 하는 것을 말한다.

13) 출소사유 중 벌금완납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미납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벌금을 납부하고 출소하는 것을 말한다.

14)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내부 행정통계), e-나자지표 지표조회 상세(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

15)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형사법개정자료(14), 1992, 법무부, 제40조의 제안이유; 김대휘, 형벌제도의 개선방안, 사법행정, 1992.7, 제374호, 29면.

16) 이와 같이 벌금형산정에 있어서 행위자의 개인적 경제적 상태, 즉 급부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으로는 정규만, 입법상 벌금형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조사월보, 1990.9, 제192호, 88면.

3. 경제사정 변화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형법에 벌금형의 액수가 총액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경제사정의 변화와 물가인상 그리고 화폐가치의 하락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¹⁷⁾ 경제사정이 변화하고 물가가 인상되어 화폐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벌금형이 가지는 형벌로서의 위하력 또한 평가절하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벌금액이 시기적절하게 인상조치되어야 하지만, 수많은 형사법령에서 벌금형만을 상향조정하는 개별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개별 형법개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거 ‘벌금등임시조치법’과 같이 잠정적이고 부분적으로 형법상의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의 벌금형과 실제 사안에 적용되는 벌금형이 그 액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임시조치법에 의한 벌금액의 인상도 때 늦은 조치일 때가 많다. 총액벌금제는 경제적 사정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4. 자유형과 벌금형 상호간 합리적 환산기준 결여

총액벌금제도하에서는 자유형과 벌금형 상호간의 합리적인 환산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각 구성요건 상호간 동일한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대해 각각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 또는 자유형의 상한이 고르지 못하고, 따라서 벌금형과 자유형의 경중이 서로 상응하지 못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¹⁸⁾ 예를 들면 형법상 범죄 중 중립명령위반죄(제112조)나 비밀침해죄(제316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예훼손죄(307조 제1항)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다중불해산죄의 경우 벌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자유형은 2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죄(제219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교상기밀의 누설죄(제113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41조)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 김대휘, 앞의 논문, 30면.

18) 강동범, 재산형의 문제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5호, 1990, 85면; 이영란, 벌금형제도 소고 : 벌금양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9호, 1997, 223면; 서보학, 앞의 논문, 78면.

이와 같이 현행 형법에는 징역·금고형과 벌금형의 경중이 서로 비례하지 않는 범죄구성요건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입법자가 선택형 관계에 있는 자유형과 벌금형의 법정형을 규정할 때에 전혀 쌍방의 경중을 비교교량하지 않고 아무 기준없이 자의로 정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¹⁹⁾

결국 이것은 일정기간의 징역이나 금고가 벌금형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액수에 해당하는 지 상호 환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발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²⁰⁾ 일정기간의 자유박탈이 어느 정도의 벌금액에 해당하는지, 반대로 일정한 벌금액수가 어느 정도기간의 자유박탈에 해당하는지 상호환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Ⅲ. 일수벌금제도 도입론에 대한 논쟁

1. 반대론의 주장

현재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²¹⁾가 다수의 입장이지만, 일수벌금제가 부자를 역차별하게 되며,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²²⁾도 있다. 일수벌금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론의 주된 근거는 ①절대적 평등과 역차별, ②형법상 책임의 원칙, ③시기상조론이다. 반대론에 대한 논거를 설명한 후 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한다.

가. 절대적 평등의 관점과 역차별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는 범죄와 관련 없이 축적해온 부에 따라서 양형상 희생동등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제시한다. 일수벌금제에서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재산이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가 되는데, 이는 부자에게 더

19) 서보학, 앞의 논문, 78면.

20) 서보학, 앞의 논문, 78면; 이진국, 앞의 논문, 75면.

21) 이재상, 벌금형제도 재고, 법조, 1977.1; 김기춘, 형법개정시론, 삼영사, 1984, 396면; 김일수, 형법개정과 제재제도의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5호, 1990, 19-20면; 정봉휘, 일수벌금제도의 고찰, 형사법연구 제4호, 1991, 212면; 오영근, 형법개정안의 형벌제도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2호, 1992 여름, 25-26면; 이영란, 벌금형제도 소고: 벌금양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9호, 1996, 221면; 서보학, 벌금형제도 소고: 비판과 입법론적 대안, 형사정책연구 제10호, 1998, 79-83면; 김종덕, 벌금형 집행률의 제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2007, 311면-312면; 이주희, 일수벌금제도: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 한양법학, 2007, 712면; 이윤식, 벌금형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무부(편),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 2008, 528면-529면; 이진국, 일수벌금제의 도입에 관한 소고,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2010, 77면이하.

22) 박기석, 벌금형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2000, 23-26면; 최병각, 노역장유치의 실제와 벌금양형,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2000, 214-217면; 박기석, 법정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 가을, 387면; 이기현, 일수벌금형제도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 514면.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책임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이 미덕인 자본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사람의 재산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정도의 형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 또는 ‘산술적 평등’의 관점이다. 벌금형의 양정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및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대하여 다른 양정사유에 비하여 보다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제적 능력의 지나친 강조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책임원칙 및 희생평등의 측면에서 역차별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 경제력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 등 사회적 여건의 미성숙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아직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시기상조론이다. 일수벌금형제도는 양형사실 중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 또한 현실적으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을 정확히 조사 및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지난 형법개정작업을 담당하였던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한 바 있었으나, 이 때에도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우리 사회적 여건상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아니한 바 있다.²³⁾ 즉 일수벌금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벌금형의 산정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이 된다면 대다수 급여생활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 새로운 불공정한 형벌제도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²⁴⁾

2. 반대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일수벌금제 도입찬성론은 종래 총액벌금형제도의 단점을 해결하여 행위자의 불법과 벌금형과의 명백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자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벌적응력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정의의 관념과 형벌의 개별화사상에 부합하는 제도로 평가한다.²⁵⁾

23)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형법개정요강 소위원회심의결과(형사법개정자료 VⅢ, 88면-89면 참조.

24) 강동법, 앞의 논문, 90면; 신의기, 앞의 논문, 126면.

25) 이재상, 법조, 1985, 128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개정연구(Ⅳ) 형법총칙 개정안 : 죄수·형벌 분야, 108면.

가. 실질적 평등의 관점과 형벌효과의 평등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의 대표적 근거는 바로 총액벌금제도의 가장 큰 약점인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으며 양형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일수벌금제의 도입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는 ‘희생동등의 원칙’ 또는 ‘상대적 평등’의 원칙이다. ‘동일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형벌효과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총액벌금제도의 가장 큰 약점인 형벌효과의 불평등은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즉 동일범죄에 대해서 동일형벌이 부과되어야 하며, 동일형벌은 동시에 동일형벌효과가 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부합한다. 결국 경제적 약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강자에게는 국가형벌의 엄준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부담감을 부과하여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중에서 특히 특별예방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총액벌금제도 또한 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다.²⁶⁾ 총액벌금제도의 경우 책임이 동일한 사건 특히 하나의 사건에서 2명의 범죄가담자가 있는 경우 행위자의 소득을 고려함이 없이 동일한 벌금액이 부과된다면, 이것은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형벌효과가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결국 형벌효과의 불평등문제는 희생동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소득을 고려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²⁷⁾

벌금형이 경제적 강자의 지갑을 통하여 형벌의 목적인 위하적 효력이나 특별예방적 효력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벌금형이 노역장 유치로 전환되어 경제적 약자의 신체를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해서는 안된다.

나.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일수벌금제도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책임주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주의는 책임을 전제하지 않은 형벌이나 책임을 초과하는 형벌을 금지하는 형법의 대원칙이지, 책임의 범주에서 양형과정상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²⁸⁾ 책임주의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①형벌은 특정범죄행위로부터 얻을

26) 하나의 사건에서 다수의 범죄가담자에 대하여 각각 다른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일수벌금제라고 할 수 없으며, 형벌효과의 평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다. 범죄가담자에 따라서 벌금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불법과 책임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지, 동일한 불법과 책임의 양이지만 행위자의 경제적 자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7) 이진국, 앞의 논문, 74면.

28) 안병욱, 벌금형제도의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64면.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해야 한다. ②범죄행위의 해악이 클수록 처벌로써의 비용도 커야 한다. ③두 가지 범죄를 선택해야 할 때, 보다 가벼운 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미한 형벌이,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한 형벌이 가해져야 한다.²⁹⁾

뿐만 아니라 양형의 기본원칙³⁰⁾이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하되 예방적 목적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해보면,³¹⁾ 법원은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행위자의 형벌감응성(Strafempfindlichkeit)과 형벌수용성(Strafempfänglichkeit)의 관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³²⁾ 형벌감응성 즉 형벌의 책임적합성은 유사한 사례에서 반드시 객관적으로 동등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동등한 사건에서 주관적으로 동일한 형벌고통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현행 총액벌금제도하에서도 벌금형의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의 경제력은 고려될 수 있고, 벌금액의 산정에 경제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들은 총액벌금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양형기준의 문제라고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³³⁾ 벌금형의 양정방식은 양형기준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총액벌금제에서는 벌금액이 분명한 기준없이 산정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바로 이런 문제점때문에 벌금액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갖춘 일수벌금제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견해에서도 일수벌금제를 채택하면 경제력이 일수정액에 직접 반영되고, 때문에 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총액벌금제의 경우보다 좀 더 용이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 특별예방적 형벌목적에 부합한다.

특별예방적 형벌목적에 따르면 형벌의 임무는 일단 형벌을 받게 된 행위자에게 장래에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행위자에 대한 위하, 행위자의 재사회화, 행위자로부터 사회방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29) 강우예, 비례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분석: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 제77호, 2009·봄호, 396면 이하.

30) 양형의 문제영역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가형벌권의 정당화와 연관된 추상적인 차원의 문제로서, 이것은 "형벌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응보이론과 예방이론 가운데 어느 것이 국가형벌을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등으로 표현된다. 둘째, 형의 양정 및 그 종류와 관련된 문제로서 "형의 양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양형은 책임의 범주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예방적인 목적에 의해 책임의 범주를 이탈할 수도 있는가?", "양형에 있어서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은 넓은 의미에서 형의 종류 파악될 수 있는 것인가?" 등이 있다. 셋째, 양형 개별적인 단계에 관한 문제로서, "개별적인 양형 요소들이 어떤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가?", "책임의 수량화와 예방적인 필요에 따른 형량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등이다. 첫 번째의 문제영역이 주로 양형의 형벌이론적인 기초와 관련된 것이라면, 두 번째의 영역은 양형이론 및 양형의 사실 요소에 관한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의 영역은 양형의 개별적인 단계에 대한 것이다.

31) 이진국, 앞의 논문, 74면-75면.

32) Henkel은 범죄자의 형벌감수성(Strafempfindlichkeit)과 형벌감응성(Strafempfänglichkeit)이라는 개념을 서로 구별하고, 이에 근거해서 형벌감수성은 책임에 적합한 형벌과 연관을 맺는 반면, 형벌감응성은 예방적인 필요와 상응한다고 말한다(ders., FS-H. Lange, 179면 이하). 또한 Arthur Kaufmann은 책임에 상응한 형벌만이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원칙과 특별예방을 서로 결부시키고 있다(ders., JZ 1967, 553면 이하).

33) 최병각, 노역장유치의 실제와 벌금양형, 215면.

‘행위자에 대한 위하’는 행위자에게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반대 동기를 형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형벌은 행위자가 장래 범죄를 포기하게 할 만큼의 영향력을 지닌 경고이어야 한다. ‘행위자의 재사회화’는 범죄조장요인을 줄이거나 배제하고 범죄억제요인을 증대시킴으로써 행위자가 장래 범죄유혹에 저항할 수 있도록 행위자의 저항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행위자로부터 사회방위’는 구금이나 벌금 등을 통하여 행위자가 그의 범죄에너지 발산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일한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이지만, 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자의 경우에는 범죄억제에 대한 효과적인 반대 동기를 형성하지 못하며, 장래 범죄유혹에 대한 저항력은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행위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될 수 있다.

라. 대체자유형 억제 가능성과 대체자유형에 대한 기준 제시 가능

국가는 경제적 약자에게는 벌금형이 너무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벌금의 미납 가능성을 줄여 노역장유치나 사회봉사 등 대체자유형이 투입되는 확률을 낮출 수 있으며, 경제적 강자에게는 국가형벌의 엄준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부담을 지워 형벌의 범죄예방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벌금미납시 대체자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벌금일수 1일을 자유형 1일로 환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즉 범죄자에 대하여 30일의 벌금일수와 1일 벌금정액이 5만원으로 선고되었을 경우 범죄자가 벌금을 미납하여 대체자유형을 부과할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이 30일의 대체자유형을 집행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신뢰증진의 측면이 있다. 경제적 능력에 적합한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등한 형벌효과와 형벌목적 달성을 수 있고 대체자유형의 집행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단기자유형의 폐해로부터 벌금미납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마. 양형격차 해소와 자유형과 벌금형 상호간 합리적 환산이 가능

일수벌금제도는 합리적 벌금형의 산정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불법과 책임이 동일한 행위를 범죄일수로 산정하고 1일 벌금정액을 평가할 때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함으로써, 법관의 양형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의적 판단을 배제함으로써 양형상의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벌금형 미납시의 환형유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³⁴⁾ 즉 일수벌금제에서는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일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유형과의 대비도 간편해 선택관계에 놓여 있는 자유형과 벌금형의 선택시, 그리고 벌금의 미납으로 인한 대체형의 투입시 자유형과 벌금형 상호간의 합리적인 환산이 가능해진다.³⁵⁾ 벌금형의 유치기간은 벌금형의 일수에 따르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바. 경제적 사정변화에 따른 탄력적 적용가능

경제적 사정 변화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화폐가치는 물가의 변동에 따라 변화할 수 밖에 없다. 물가상승기에는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며, 물가하락시에는 화폐의 구매력이 증대된다. 또한 국가의 재정정책에 따라 통화가치는 변동되는 것은 당연하다. 1990년대의 100만원이 가지는 화폐가치와 2020년대의 100만원이 가지는 화폐가치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총액벌금제를 취할 경우에는 변화하는 경제사정에 따라 대응하기 어렵지만, 일수벌금제는 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법관이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경제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형벌의 개별화사상에도 적합하다.

사. 경제력 사정에 대한 조사

일수벌금형 도입에 대한 형법이론적 근거는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도입을 주저하게 되는 것은 실무적 관점이다. 일수벌금형제도의 기초가 되는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조사 및 이에 대한 확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도입에 대한 반대론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수벌금제의 도입이 처음 제기되었던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도입을 추진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실명제 및 금융실명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개인의 자산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수 있으며,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기관의 협조가 과거에 비해서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4) 강동범, 재산형의 문제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1990, 88면-89면.

35) 서보학, 앞의 논문, 79면.

피고인의 자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사항을 공무소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의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더욱 바람직한 것은 법원이 은행이나 국세청, 피고인이 소속된 기업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보수나 자산상태의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회결과의 비밀을 보장하는 입법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³⁶⁾

또한 대부분 피고인들의 자산상태는 현재 갖고 있는 직업의 종류와 직책, 소득세 또는 재산세의 과세 또는 비과세증명서 등을 통해 대부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외관상으로는 실업자·무자격자이나 실제로는 은닉재산으로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법원은 벌금형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인의 직업·직책, 자녀 수, 부양가족의 존재 여부, 그리고 법원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이 제출한 과세 또는 비과세증명서 등을 참고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한다면 대부분 법원의 판단과 피고인의 실제 경제능력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³⁷⁾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면 법원이 여러 가지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를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에 대하여 반드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1일 벌금액을 '추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일수벌금제의 도입을 위해서 반드시 정확한 개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IV.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1. 문제제기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과 타당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무상 운영에 있어서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2019년도에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³⁸⁾은 모두 1,481,392건으로 전체사건의 8.4%, 소송사건의 22.35를 차지하고 있다. 공판사건은 343,150명, 약식명령사건은 491,690명(전자약식 포함), 즉결사건은 67,864명이다. 특히 약식명령사건은 전체 사건의 2.8%, 전체

36) 김대휘, 앞의 논문, 30면.

37) 서보학, 앞의 논문, 82면.

38) 형사사건은 공판사건(합의·단독사건), 치료감호사건, 약식사건, 즉결사건, 영장사건, 신청사건 등이다.

소송사건의 7.4%, 전체 형사사건의 33.2%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형사사건 연도별 비교-접수³⁹⁾

| 구분 연도 | 합 계 | | 공 판 사 건 | | 약 식 명 령 사 건 | |
|----------|-----------|-------|---------|-------|-------------|-------|
| | 인 원 수 | 지 수 | 인 원 수 | 지 수 | 인 원 수 | 지 수 |
| 2010 | 1,703,845 | 100.0 | 356,587 | 100.0 | 868,901 | 100.0 |
| 2011 | 1,655,333 | 97.2 | 368,992 | 103.5 | 800,357 | 92.1 |
| 2012 | 1,619,141 | 95.0 | 378,617 | 106.2 | 751,823 | 86.5 |
| 2013 | 1,656,961 | 97.2 | 358,213 | 100.5 | 743,166 | 85.5 |
| 2014 | 1,582,373 | 92.9 | 366,772 | 102.9 | 684,644 | 78.8 |
| 2015 | 1,577,686 | 92.6 | 363,652 | 102.0 | 667,471 | 76.8 |
| 2016 | 1,644,804 | 96.5 | 389,155 | 109.1 | 684,072 | 78.7 |
| 2017 | 1,546,597 | 90.8 | 371,887 | 104.3 | 605,755 | 69.7 |
| 2018 | 1,455,735 | 85.4 | 339,753 | 95.3 | 520,947 | 60.0 |
| 2019 | 1,481,392 | 86.9 | 343,150 | 96.2 | 491,690 | 56.6 |

| 구분 연도 | 즉 결 사 건 | | 영 장 사 건 | | 신 청 및 (재) 항 고 | |
|----------|---------|-------|---------|-------|---------------|-------|
| | 인 원 수 | 지 수 | 인 원 수 | 지 수 | 인 원 수 | 지 수 |
| 2010 | 61,349 | 100.0 | 312,886 | 100.0 | 104,122 | 100.0 |
| 2011 | 56,334 | 91.8 | 310,190 | 99.1 | 119,460 | 114.7 |
| 2012 | 53,054 | 86.5 | 307,806 | 98.4 | 127,841 | 122.8 |
| 2013 | 56,099 | 91.4 | 372,984 | 119.2 | 126,499 | 121.5 |
| 2014 | 46,469 | 75.7 | 367,114 | 117.3 | 117,374 | 112.7 |
| 2015 | 54,239 | 88.4 | 380,799 | 121.7 | 111,525 | 107.1 |
| 2016 | 74,580 | 121.6 | 392,456 | 125.4 | 104,541 | 100.4 |
| 2017 | 70,319 | 114.6 | 396,698 | 126.8 | 101,938 | 97.9 |
| 2018 | 65,280 | 106.4 | 429,985 | 137.4 | 99,770 | 95.8 |
| 2019 | 67,864 | 110.6 | 466,329 | 149.0 | 112,359 | 107.9 |

주 : 공판사건 인원수에는 치료감호처분사건 인원수가 포함되었음

2019년 형사공판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제1심에서 재산형이 선고된 경우는 59,780건이며, 항소심에서 재산형이 선고된 경우는 4,388건이다. 전체 형사사건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약식명령사건은 2019년 473,789건이 접수되었는데, 정식재판청구 또는 직권공판회부된 사건을 제외하면 480,409건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다.⁴⁰⁾

즉결심판사건은 2019년 67,864건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4.6%, 전체 소송사건의 1.0%를 각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 형사사건 중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은 608,053건이다. 결국 일수벌금제를 도입할 경우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사건이 한해 약 60만건에 해당하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60만건에 달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제적 사정을 조사

39)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0, 617면.

40)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0, 631면 참조.

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일부 절차에 대해서만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여 경제적 사정을 조사하는 절차를 신설할 지를 정책적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공판사건으로 이전되지 않고도 피고인의 벌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현실적·제도적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 한다면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으며, 법원이나 검찰의 업무폭주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러한 현실적·실무적 어려움 때문에 독일의 경우 벌금형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행위자의 수입과 재산 등은 법원이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 의한 추정은 부정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본성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줄여서 보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의 진술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일수벌금제를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할 것인가 아니면 약식명령사건과 같이 일부 절차에 대해서만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조사방법 및 판단기준, 재산상태에 대한 추정 규정을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 운용되고 있거나 시범적으로 운용되었던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도도입을 위한 목표 및 우선순위 결정: 벌금의 형평성/단기자유형의 억제

가. 제도의 목표 설정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단계에서는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위한 목표가 무엇이며,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된다. 제도의 목표는 제도도입으로부터 기대될 수 있는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목표는 실무자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공통적 지향점이 된다. 이러한 목표는 제도도입의 성공여부와 그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추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에는 벌금부과에 있어서 형평성 또는 공평성 증대, 경제적 강자에 대한 범죄억지력 증대, 단기자유형의 폐해 방지, 교정시설의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 국가수입의 증대와 같이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장점이 제도 도입을 위한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나. 외국의 경우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한 국가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대 벌금일수는 60일 또는 120일로 설정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단순히 ‘벌금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독일·스위스·프랑스·스페인과 같이 최대 벌금일수를 360일에서 720일로 설정한 국가에서는 법체계상 자유형에 처해질 수 있는 비교적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까지 자유형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사용함으로써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자유형 대신에 일수벌금제를 성공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1968년과 일수벌금형 제도 시행 이듬해인 1976년의 통계를 보면 6개월 이하의 단기 자유형의 선고건수는 11만건에서 1만건으로 90%나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⁴¹⁾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자유형뿐만 아니라 벌금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재산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3/4과 폭행 및 상해로 인해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2/3에 대하여 일수벌금만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일수벌금제의 도입을 추진하였던 미국의 경우는 독일의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것이 목표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교도소의 과밀수용 해소 및 유지비용의 절감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수벌금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관련문헌을 분석해보면 ‘벌금의 형평성’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비용증가’에 대한 분석을 한 후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중간적 형사제재적 성격을 가진 일수벌금제를 주장하고 있다.

다. 목표와 최대벌금일수와의 상관관계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벌금의 형평성 및 형벌효과의 동등성을 실현하기 위해 일수벌금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최대 벌금일수가 60일 또는 120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인 반면에,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거나 구금시설의 인적·물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수벌금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최대 벌금일수가 360일 또는 720일로 설정하는 등 비교적 장기로

41)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How to Use Structured Fines (Day Fines) as an Intermediate Sanction, 1996, P.3.

설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 360일이라는 비교적 장기의 최대벌금일수를 설정하고 있는 독일모델의 경우 일수벌금제도는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더 적합하며, 단기의 최대벌금일수를 설정하고 있는 스웨덴모델의 경우 자유형에 처하기 곤란한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단순히 벌금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인 경우에 더 적합하다.

라. 우리나라의 경우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제도도입의 정책적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즉 벌금형의 형평성을 높이고 형벌효과의 불평등성을 낮추기 위한 목표라면 최대벌금일수는 스칸디나비아국가들처럼 비교적 낮은 일수를 설정해야 할 것이지만, 만약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 또는 단기자유형의 증가로 인한 구금비용의 절감을 정책적 목표로 한다면 최대 벌금일수는 비교적 높은 일수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벌금에 대한 대부분 법정형의 상한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로 비교적 낮게 설정되어 있다.⁴²⁾ 또한 1일 벌금액을 10만원으로 예상할 경우 최대 벌금일수가 50일에서 100일 정도이며, 양형 관행상 단기자유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적 성격보다는 벌금형의 형평성이나 형벌효과의 평등성을 지향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정책적 목표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형법 제70조의 '노역장 유치'이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을 동시에 선고한다. 이 경우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를 한다. 즉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벌효과의 불평등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최대벌금일수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3년 이하로 설정한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대 벌금일수를 1년 이하로 설정할 경우에는 2년 이상 3년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제도적 운영에 흠결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도입에 찬성을 하는 국민의 인식이 고액벌금미납자에 대한 부정

42)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매우 탄력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지만, 자유형과 벌금형 상호간 지나치게 불균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적 인식이 근거에 있다고 생각한다.⁴³⁾

노역장 유치제도의 운영과의 조화를 고려한다면 최대벌금일수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벌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자유형으로 전환해야 되는 경우에도 자유형과 벌금형 상호간의 환산이 합리적으로 가능해진다. 벌금형의 유치기간은 벌금형의 일수에 따르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오히려 최대 벌금일수를 3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일수벌금제도 도입시 적용범위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현실적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다면 다음으로 일수벌금을 부과하기에 적합한 범죄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부적합한 범죄유형의 경우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분적으로는 일수벌금제와 총액벌금제를 혼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일수벌금제 도입에 적합한 범죄유형과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범죄유형을 나누어 설명한다.

가. 일수벌금제 도입에 적합한 범죄유형

1)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욕범

범죄를 동기에 따라 곤궁범과 이욕범으로 구분한다면 이욕범이 일수벌금형을 부과하기에 적당할 것이다. 곤궁범은 가난이 범죄의 원인이라면, 이욕범은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범죄의 원인이다. 이욕범은 타산적인 범죄이므로 체포확률과 벌금형의 액수를 감안할 때 범행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범죄자 스스로 범행을 억제할 것이다. 이욕범의 경우에는 범죄의 대가로 막대한 이윤을 추구한다. 이욕범의 주관적 특성은 즉흥적·우발적·감정적이 아니라 높은 이익추구와 합리적으로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살인·절도 등과 같은 전통적인 범죄와는 다르다. 이욕범의 대다수는 궁극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경제적 인간상(homo economicus)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⁴⁴⁾ 범죄자들의 주된 범행동기가 이윤의 극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범죄로 인해 발생한 이익보다 처벌의 경제적 가치가 적게

43) 이른바 '황제노역'에 대한 비판이다.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한 경우 경제적 강자는 1일 노역이 수천만원에 해당할 수 있는 반면에, 경제적 약자의 1일 노역은 10만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이다.

44) 이진국, 환경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로서 원상회복명령, 환경법연구 제37권 제2호, 58면.

되면 안된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벌금 또는 처벌의 수준은 충분히 높아야 되며, 범죄로 인하여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경제학적 비용과 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범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편익(=범죄실행)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범함으로써 감수할 밖에 없는 비용(=범죄에 대한 처벌)을 증가시키는 것이 범죄에 대한 최적의 대응방식이 될 수 있다.⁴⁵⁾ 그렇지 않다면 범죄의 억지력 또는 형벌의 특별예방적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⁴⁶⁾

2) 고의범이나 비윤리적 범죄

일수벌금제도를 시범 실시한 미국의 Iowa와 Oregon주에서는 일수벌금 선고사건의 상당 부분이 교통범죄이었다. 미국 법원에서 일수벌금은 자유형을 대체하지 못하고 교통과실범 같은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범죄에만 일수벌금을 제한적으로 부과하였다. 과실범은 자유형을 통해 교정해야 할만한 범죄적 악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벌금형에 적합하다.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범죄억제적 효과가 큰 것은 고의범이나 윤리적 비난이 큰 범죄유형일 것이다. 고의범의 경우 범위반행위로 인한 벌금을 형사벌이라기 보다는 세금의 성격이라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처벌의 성격을 도덕 중립적인 방해물(Morally Neutral Nuisance)⁴⁷⁾로 여기게 된다. 고의범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주된 범죄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범죄억제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 총액벌금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범죄유형

1)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총액벌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벌규정은 행위자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법인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벌금형만이 유일한 형사제재가 된다. 법인도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행위자와 같이 처벌될 수 있다.

45) 이진국, 앞의 논문, 59면.

46) 응보주의의 관점에서도 같다. 응보주의의 관점에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죄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한다면 진정한 응보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범죄에서 발생한 이익도 고려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의 단계로 돌려놓는 것이 진정한 응보주의이다.

47) 시민들의 입장에서 귀찮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수벌금제를 적용하게 되면 일수정액의 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기업의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자산총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설정이 곤란하다. 개인의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기업의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되므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벌규정에 범죄행위자의 책임과는 달리 별도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벌금형보다 더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그 입법목적에 맞게 총액의 형태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같은 경미범죄

지나치게 중한 범죄를 일수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형법의 사회방위 임무를 고려할 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에도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법정화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대범죄에 대하여 일수벌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하지만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수벌금형을 부과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조사과정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생각할 때 벌금일수를 정할 때 극히 적은 벌금일수에 대해 일수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사법경제적 관점에서 낭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경우와 같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현행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서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의 실패사례를 보면 경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가 터무니 없이 높은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를 일으켰다.⁴⁸⁾⁴⁹⁾ 영국의 경우 경죄 중 자동차운행관련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가장 많이 선고되었는데, 제도를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언론에 의하여 집중비난을 받았다. 물론 벌금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적용방식이 기계적이라서 법원의 양형상 재량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영국의 일수벌금제의 폐지에 한몫했다.⁵⁰⁾

48) Exercising Discretion, Gelsthorpe and Padfield 2003, pp.61-62.

49) 예를 들면, 잉글랜드의 웨스트요크셔 (West Yorkshire)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투면서 폭행에 연루되었을 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벌금으로 640파운드, 또 다른 한 사람은 64파운드가 부과되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두 사람의 소득 차에 따른 것이었다.

50) 당시 내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제도에 대해 양형과 관련하여 범조계와 일반대중의 불만이 상당하다. 우리는 이 제도 시행 이후 대단히 불합리한 몇 개의 사례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우리는 이 제도가 지극히 기계적이고, 너무 복잡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 이 제도는 개개 사건에서 치안판사가 행사할 수 있는 양형상의 재량을 불필요하게 침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예를 들면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경우에는 일수벌금제보다는 현행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총액 / 일수벌금제의 혼용 가능성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고자할 경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총액벌금제를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동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총액벌금제도를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총액벌금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도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본격적 논의가 없으나, 발표된 국내의 문헌을 참고하면 일수벌금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국내입법 중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유형군들은 아주 다양하며, 벌금형을 선택형이든 병과형이든 관계없이 형사제재 중 하나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들도 그 입법목적만큼이나 다양하다. 다양한 형태의 법률과 범죄유형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시행과정에서 제도적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영국의 사례와 같이 오히려 벌금부과의 형평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의 입법목적과 범죄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아 형벌효과와 불평등성뿐만 아니라 적용법률간의 차이로 인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제도도입을 위한 시범적 또는 도입과정에서는 일부 범죄유형이나 일부 법률에 한정하여⁵¹⁾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떤 범죄유형에 일수벌금제도 도입의 효과성이 높은지에 대한 연구가 추후 계속될 필요가 있다. 양형정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일수벌금제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비용절감과 형사제재 체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실제로 일수벌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양형관행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수벌금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특정범죄유형에만 한정하여 실시할 이론적 정당성은 없다. 일수벌금제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구체적 범죄유형에 따라 서열화하지 않고 양형원칙에 따른 일반적 기준만을 설정한 후 법관의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벌금일수 확정에 있어서 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불법의 정도와 예방의 목적을 고려하여 벌금일수를 법원이 정하는 것이다. 불법의 정도를 고려함에 있어서 양형에서 요구되는 모든

51) 이러한 유형으로 제시해볼 수 있는 것으로 질서위반법이나 교통관련범죄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유형이나 식품위생법위반, 환경관련범죄 등과 같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범죄 등이 있을 수 있다.

요소들, 특히 행위자의 전력,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사정, 범행이후의 태도가 고려되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와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제적 관점에서 현행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1일 벌금액의 산정

가. 기본적 고려사항

1일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벌금일수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수벌금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1일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① 범죄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벌금총액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② 동일한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총액은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경제적 타격’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벌금액 산정 모델

1일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크게 독일의 ‘순수입 기준원칙’과 스웨덴의 ‘최저생계비 보장원칙’, ‘양자의 혼합모델’과 같이 3가지 모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순수입 기준모델

독일의 경우 ‘순수입 기준원칙(Nettoeinkommenssystem)’에 따라 범죄자의 일일 순수입을 1일 벌금액으로 삼는다. 순수입원칙에 따르면 개별적 1일 벌금정액의 크기는 통상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실제 1일 수입 또는 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구체적으로 획득가능한 1일 수입에서 출발하여 산정한다. 이 때 벌금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입의 범위는 해석상 광범위하다. 그 결과 자영소득과 급여소득, 공적·사적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유가증권 및 기타 투자자산소득 등의 전체소득 이외에도 범죄인의 재산이 수입원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순수입원칙은 범죄인의 수입이 전부 박탈되고 더욱이 책임 정도에 따라 결정된 벌금일수가 장기인 경우에는 범죄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될 수 있다.⁵²⁾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일의 양형실무에서는 독일형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순수입원칙을 일수정액산

52) Köhler, Strafrecht AT, 1996, 628면.

정의 기본원칙으로 하되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가족법상의 부양의무, 보험료, 병원치료비, 자녀교육비 등을 벌금감액요소로서 고려하여 일수정액을 산정하고 있다. 범죄자의 총수입에서 세금, 의무보험금, 실업보험금을 공제한 뒤 남은 액수인 범죄자의 순수입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한다. 이와 같은 순수입을 소득을 얻는데 소요된 기간으로 나누면 일일 순수입이 된다.

2) 최저생계비 보장원칙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최저생계비 보장원칙(Einbüßesystem)’에 따라 처음부터 순수입에서 범죄자와 그 피부양자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액수를 1일 벌금액으로 삼아서 독일에 비해 범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최저생계비보장원칙은 범죄인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금액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한다. 비록 일수벌금제도의 도입 목적이 경제적 약자와 강자 간의 희생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최저생계비내에서의 금액은 경제적 약자와 강자간에는 동등하며, 최저생계비이상의 금액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형벌침해의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보장원칙에 의해 일수정액을 산정하게 되면 벌금형의 처벌효과가 범죄인에게만 제한된다는 장점이 있다. 즉 형벌부과로 침해되는 것은 범죄인에게 속한 재정적 수단일 뿐 범죄인의 가족은 형벌의 침해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이다.⁵³⁾

스웨덴의 경우 1일 벌금액을 범죄자의 연수입의 1/1,000으로 잡거나 1일 총수입의 1/4 정도로 보지만, 피부양자의 수, 세금, 중대한 부채나 자산 등 행위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다소간 조정을 하며, 핀란드의 경우 범죄자의 월 순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뒤, 이를 60으로 나눈다. 이를 다시 미성년자 자녀 1명당 3유로씩 공제한다. 만약 자산이 85,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위당 벌금액이 증액된다.

3) 혼합방식

미국의 Staten Island는 양자를 혼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먼저 범죄자의 1일 순수입을 확정한다. 순수입은 세후임금, 복지수당, 실업수당 등 범죄자의 수입을 지급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이다. 다음으로 1일 순수입에서 최저생계비와 가족부양비를 고려하여 1일 벌금액을 하향조정한다. 마지막으로 벌금이 중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가적인 감경을 하였다. 즉 수입이 연방 빈곤선 이상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1/3을, 빈곤선 이하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1/2을 감경해주었다.

53) 이주희, 일수벌금제도: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 한양법학, 2007, 708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 중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 다르듯이 국가의 경제체재, 복지체재, 최저임금, 기초생활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모델을 설정한 후 1일 벌금정액을 산정한 후 평가해보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일수정액의 최대한을 설정한 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비율씩 감액하여 주는 방법도 혼합적 방식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소득분위에서 치고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2을 감경해주는 방식이 그것이다.

6. 재산상태의 조사와 추정규정

가. 피고인에 대한 재산정보와 이에 대한 추정

벌금형의 산정을 위해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조사·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수벌금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도 범죄자 개인의 소득정보에 대한 접근방법과 이를 통한 1일벌금액 산정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범죄자 개인의 소득정보에 대한 접근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광범위한 추정규정을 두거나 또는 범죄자 개인이 제출한 정보에 의존하거나 신뢰한 후 1일 벌금액을 정하는 국가도 있는 반면에, 스웨덴이나 스위스 또는 프랑스와 같이 비교적 피고인의 재산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이 없거나 자유롭기 때문에 1일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국가도 있다.

1) 미국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 범죄자의 소득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었다. 연방국세청(IRS)은 개인의 소득세 정보를 법원에 노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연방이나 주의 생활보호법은 개인의 동의없이 금융기관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시범실시 당시의 미국에서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관련정보들이 집행관, 검찰공무원, 변호인, 공판전 심리관 등에 의해서 수집되기 때문에⁵⁴⁾ 이를 활용하는 방법과 범죄자의 기록에 대한 소환장(subpoena)를 발부하거나 공판준비절차나 수사기간 동안 경찰에 노출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소득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소득확인서를 제

54) 뉴욕시와 오레곤주의 경우 소득정보 수집에 대한 예는 본 보고서 61면 참조.

출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독일의 경우

독일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산상태의 조사에 대하여 추산(Schätzung)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독일에서도 피고인의 재산정보수집을 위하여 형법택일안(AE)이 법원에게 세무 당국이나 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경제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세금·소득·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었다(AE 49 Abs. S.2).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벌금형의 익명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고 당사자의 경제적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상반되는 이익과 교량할 때 비례성이 없다는 반론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⁵⁵⁾

독일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조사함에 있어서 벌금산정의 개별적인 요소들인 소득, 생계의무, 기타 비용지불의무 등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증명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는 매우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되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독일형법 제355조의 조세비밀누설죄로 인하여 세무서 등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열람하여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방식도 봉쇄되어 있다.

결국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독일형법 제40조 제3항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수입, 재산 기타 기초사실을 추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산상태 조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벌금형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행위자의 수입과 재산 등과 같은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법원이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재산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 규정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피고인의 자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사항을 공무소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의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법원이 은행이나 국세청, 피고인이 소속된 기업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보수나 자산상태의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회결과의 비밀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적 방법도 가능하다.⁵⁶⁾

공무소, 은행, 회사, 고용주 기타의 자에 대하여 대상자의 예금, 재산, 수입 등 경제적 상태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55) Zipf. Problem der Neuregelungen der Geldstrafe in Deutschland, ZStW 86, 1974, S.528.

56) 김대휘, 앞의 논문, 30면: 이는 스위스형법 제34조 제3항과 같이 연방, 칸톤, 지방자치단체가 1일 벌금정액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규정을 직접적으로 두는 방법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이나 과세를 위하여 재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다수 존재한다.

4) 추정 규정의 도입 필요성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자산상태는 현재 갖고 있는 직업의 종류와 직책, 소득세 또는 재산세의 과세 또는 비과세증명서 등을 통해 대부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외관상으로는 실업자·무자력자이지만 실제로는 은닉재산으로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입장에서 법원은 벌금형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인의 직업·직책, 자녀수, 부양가족의 존재여부, 그리고 법원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이 제출한 과세 또는 비과세증명서 등을 참고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의 판단과 피고인의 실제 경제적 능력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⁵⁷⁾

재산상태 조사가 사실상 곤란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일형 법과 같이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자산을 추정하는 방식은 재산조사의 어려움과 결과의 부정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벌금형의 산정을 위해 반드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 한다면 피고인의 사생활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업무폭주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직업·가족관계·과세자료 등을 통해 어느 정도는 비교적 정확한 자산상태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 본성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줄여서 보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의 진술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수벌금제에서 피고인의 자산상태는 제반 자료를 근거로 법원으로 하여금 추정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특수유형의 범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벌금액 산정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이 매년 직전년도의 소득액을 신고하여 이를 기초로 한 국민의 세금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다면 급여소득자의 경우 재산상태의 조사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소득 범죄자, 학생이나 주부와 같이 개인소득이 없는 범죄자, 범죄소득이 있는 범죄자, 자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재산조사 및 1일 벌금액을 산정함에

57) 서보학, 앞의 논문, 82면.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1) 저소득 범죄자에 대한 1일 벌금액산정

미국의 경우 범죄자가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적거나 전혀 없는 저소득자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회보장연금, 실업수당, 장애인 수당 등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그 수입을 기초로 일수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저소득 범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많았고, 벌금 납부율 또한 높았다. 물론 경제적 극빈자에게까지 벌금을 과해서는 안되겠지만, 대부분의 저소득 범죄자들은 일수벌금을 납부하는데 문제가 없다. 1일 벌금액을 그들에게 적합하게 정하고,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분할납입을 허용하기만 한다면 그들도 다소간의 금전적 지불능력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벌금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노역장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수벌금제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벌금형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2) 개인소득이 없는 범죄자

범죄자 중에는 본인의 수입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즉, 배우자의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주로 가족의 수입에 의존하는 학생이나 장애인, 현재는 일시적으로 가족의 수입 등에 의존하지만 장래 취업가능성이 있는 실업자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접근방법이 있다.

첫 번째 접근방법은 간단하게 ‘범죄자의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 때 1일 벌금액은 소득이 없는 범죄자가 마치 당해 가구의 가장인 경우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들까지 감안하여 책정된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1일 벌금액을, 단지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와 무관한 타인의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함으로써 사실상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접근방법은 학생 또는 취업 가능한 실업자에게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서 범죄자의 ‘노동시장에서의 가치에 입각한 잠재수입’을 평가하여 1일 벌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그의 노동가치는 비숙련 노동자(unskilledworker)일 경우 ‘법령상의 최저임금’이나 패스트푸드 점 근로자, 판매직원, 집꾼 같은 저임금 노동시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고, 숙련 노동자일 경우에는 유사한 직업을 다시 얻을 수 있으리라는 가정 하에 그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가졌던 직업을 통해 벌어들인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불경기에는 실제 취업이 어려워져 추정액이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접근방법은 첫 번째 방법처럼 가족 혹은 가구 구성원의 수입을 고려하되 범죄와

무관한 가족들의 부담을 감경해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족의 수입 중 범죄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에다가 법원이 재량으로 인정하는 범죄자의 가상수입을 합쳐서 1일 벌금액 사정 기준으로 삼는다.

네 번째 접근방법은 그 지역의 '일반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다. 이는 실업률이 높고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최저생계비로 유지하는 경제적 극빈자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형벌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지하경제활동소득 혹은 범죄소득이 있는 범죄자

범죄자들 중에는 도박장운영과 같이 범죄활동 등과 같은 지하경제(The under-ground economy)를 통해서 수입을 얻는 자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① 이러한 범죄자들이 일수 벌금제의 대상자로서 적합한가라는 문제와 ② 만약 일수벌금제의 대상자로서 적합하다면 어떻게 1일벌금액을 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범죄로 인한 소득이 있는 범죄자들에게 대해서도 벌금형은 부과되어 왔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범죄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적은 벌금액수가 부과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범죄소득이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일수벌금제의 적용을 부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도박장 개장, 마약 판매와 소지, 매춘을 범한 범죄자들에 대한 벌금형이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수벌금형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생활태도와 범죄자의 일일수입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수입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수벌금을 부과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범죄자의 생활방식을 조사해서 그의 순 일일수입을 추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재산상태의 추정을 허용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즉 범죄자의 외모나 의상의 관찰, 범죄 경력 조사,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 자동차 등과 같은 소유물, 레저활동과 같은 개인적 습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범죄자의 수입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4) 자본자산을 보유한 범죄자

주식, 채권 등 자본자산(capital assets)을 보유한 범죄자나 자본자산만 있고 자신의 고정수입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범죄자의 경우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 스웨덴의 경우 순자본자산이 일정액을 초과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인의 실물자산을 일수 벌금액 사정에 참작하였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포함하는 중죄에 대해서도 일수벌금제를 적용하려면 범죄자의 순수입 이외에 축적된 현금자산이나 부동산을 참작하는 방법을 개발해

야 할 것이다.

문제는 범죄인의 일반재산을 1일 벌금정액 사정에 참작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참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일수벌금형제도가 아무리 개인적 경제적 사정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재산을 일부 몰수하는 의미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수벌금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수입을 박탈함으로써 생활의 불편이나 고통을 준다는 것일 뿐, 자신의 능력과 정당한 노력으로 축적되었고 범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반재산을 박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7. 형법 개정의 방식

일수벌금제를 도입할 경우 형법을 개정하는 경우 형법 제45조의 벌금에 대한 개정이 최우선될 것이다. 이외에도 노역장 유치와 관련된 제70조 또한 개정되어야 하며, 유치기간에 대한 제70조 제2항의 규정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법각칙의 개별범죄구성요건에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형식으로 벌금총액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벌금총액을 삭제하였다는 것은 일수벌금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일수벌금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형법규정은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국회에 제안된 개정법률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다소 문제이다.

V. 결론

일수벌금제는 총액벌금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인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로 국내에 소개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현재 총액벌금제에서는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적 약자에게는 매우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경제적 강자에게는 형벌효과가 미흡하거나 형벌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액벌금제는 경제사정의 변화와 물가인상, 화폐가치의 하락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주장 또한 경청할만하다.

일수벌금제에 대하여 오해가 많다. 평등의 원칙과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하지만, 실질적 평등의 관점과 형벌효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일수벌금제는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특별예방적 형벌목적에 부합하며, 대체자유형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대체자유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양형격차 해소와 자유형과 벌금형 상호간 합리적 환산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사정변화에 따른 탄력적 적용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이론적 장점이다.

하지만 벌금형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경제상태를 고려하는 일수벌금제도는 법리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실무적으로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에 따라 벌금일수를 정하는 것은 양형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동시에 행위자의 현재 경제적 상태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면 이는 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법집행기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고 자칫하면 합리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양형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사법부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한 법이론적 정당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무상 운영에 있어서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가 많다. 일수벌금제에 대한 논의는 도입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넘어서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수립방안에 집중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방안에 대하여 5가지 관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①제도도입의 목표, ②최대벌금일수의 문제, ③일부범죄유형에 대한 총액벌금제 유지, ④1일벌금액 산정모델, ⑤재산에 대한 추정규정과 재산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이다.

1. 일수벌금제도의 장점에는 벌금부과의 형평성 증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범죄억지력 증대, 단기자유형의 피해 방지, 교정시설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잠재적 장점이 총액벌금제에 비하여 크다.
2. 제도도입의 목표는 최대 벌금일수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제도 도입목표가 형벌효과의 불평등성의 관점이라면 비교적 낮은 일수를 설정할 수 있지만, 단기자유형의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비교적 높은 일수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형법 제70조의 노역장유치와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기간을 최대 3년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벌금형과 자유형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대 벌금일수를 1일 이상 3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일수벌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벌금미납이 발생할 경우 자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월하다.

3. 일수벌금을 부과하기에 부적합한 범죄유형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수벌금을 적용할 경우 범죄억지력이 높은 범죄유형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욕범이나 고의범, 윤리적 비난이 강한 범죄유형일 것이다. 하지만,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처벌의 경우에는 일수정액을 산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또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와 같이 지나치게 낮은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법집행기관의 비용이나 인력을 고려할 때 일수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사법경제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법인에 대한 처벌과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4. 1일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의 입법모델이 있다. 순수입 기준모델이나 최저생계비 보장모델, 양자의 혼합모델이 있다. 이는 국가의 경제체재나 복지체재, 최저임금, 기초생활비 등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일수벌금제 도입에 가장 큰 장애는 재산상태의 조사에 대한 것이다. 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법원의 업무 폭주의 문제, 피고인의 자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능성, 범죄자 본인에 대한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사생활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침해의 우려 등 재산조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소득자 범죄자에 대한 벌금액 산정, 개인소득이 없거나 지하경제활동 소득이 있는 범죄자, 자본자산을 보유한 범죄자에 대한 경제적 조사에 대한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추정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실조회를 활용하는 방법, 공무소, 은행, 회사, 고용주 기타의 자에 대하여 대상자의 예금, 재산, 수입 등 경제적 상태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규정을 두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옳은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제도도입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도도입의 목표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방안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도입과정에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논점에서 제시를 하였다. 도입과정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종 · 합 · 토 · 론

한영수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진우 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오창익 사무국장 인권연대

박혜림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이경재 사무관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

일수벌금형제도에 대한

토 론 문

한영수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의 함의

1) 형벌효과의 형평성 제고

현행 총액 벌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 형벌효과의 불평등성

- 같은 금액의 벌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매우 가혹한 형벌효과를 가져오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에게는 그 형벌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은 현행 총액 벌금 제도에서의 빈부의 차이로 인한 형벌효과의 극단적 불평등성을 완화하여 벌금형의 형평성을 상대적으로 높이자는 취지다.

2) 범죄(불법)의 경중에 따른 벌금의 일수 선고

- 현행 총액 벌금제도는 벌금 액수(총액)의 경중에 의하여 불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기준임
- 그러나 일수벌금제도는 범죄(불법)의 경중을 벌금의 일수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임 : 예를 들어 징역형의 형기, 즉 자유 박탈의 월수가 범죄(불법)의 경중을 구별해주듯이 벌금의 일수는 행위자가 저지른 범죄(불법)의 경중을 드러내 준다.

3) 벌금형의 양정 순서를 바꾸는 것임

- 현행 형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할 때 미납 시 유치 기간을 동시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판사가 피고인의 범죄

- (불법)의 경중을 고려하여 먼저 벌금의 총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의 미납 시 노역장의 유치 일수를 역으로 산출하여 벌금을 선고할 때 동시에 정하여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 그러나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판사가 먼저 피고인의 범죄행위 불법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의 일수를 산정하고, 1일당 벌금 액수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산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2. 일수벌금제도 도입의 목적 : 벌금의 형벌효과 강화

1)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벌금의 형벌기능 약화(형벌효과 감소)를 의미하지 아니함

- 일수벌금제의 도입이 마치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금감면과 같은 복지(분배정의)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각인되는 것은 곤란하다.
- 명칭만을 고려해보면, 재산비례벌금형이 일수벌금제보다 일반시민에게 쉽게 이해될 만하다. 다만, 재산비례벌금제라는 명칭이 정치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형벌효과 감쇄(부자에 대한 엄벌)로 이해되어 일수벌금제의 본래 목표인 벌금형의 형벌기능 강화의 목적이 입법과정에서 논의의 중심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다.
- 일수벌금제의 도입은 빈부격차의 해소가 목적이 아니라, 빈부격차에 따른 형벌효과 의 지나친 불평등성을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가 선고되고 그 벌금의 형벌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여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형벌효과를 높이 자는데 그 취지가 담겨 있다.
- 따라서 1일 벌금액의 하한을 지나치게 낮추어 벌금의 형벌기능을 무력하게 만들면 안 된다. 예를 들어 1일 벌금액의 하한을 1,000원이나 10,000원 정도로 설정하면 벌금 10일의 벌금액이 1만 원이나 10만 원에 불과하여 벌금의 형벌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 그러므로 일수벌금제의 도입 논의에서 1일 벌금액의 하한 설정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3~5만 원 정도에서 1일 벌금액의 하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일 벌금액의 하한 설정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무자력자에게는 벌금 납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은 이미 현행 법령에 벌금의 집행유예제도와 미납벌금의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즉, 벌금 납부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벌금 납부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라면 법원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하면 되고, 처음에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으나 질병이나 경제위기 등의 발발로 벌금형의 집행과정에서 사

정변경이 생긴 경우 미납벌금의 사회봉사명령 대체제도 등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2) 범죄(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

- 일수벌금제의 도입 취지는 범죄(불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벌을 부과하자는 것이지, 부자에 대한 지나친 형벌 강화, 즉 징벌적 엄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1일 벌금액의 상한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일수벌금제의 도입으로 종전보다 벌금액이 급격하게 상향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일 벌금액의 상한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면 벌금 10일은 1,000만 원, 벌금 100일은 1억 원이 된다. 벌금 일수의 상한을 통일형법 시안과 같이 360일로 정한다면 벌금액의 상한은 3억 6천만 원이 된다.
- 1일 벌금액의 상한을 설정할 때 현행 형법의 벌금 상한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법(각칙)은 벌금 상한액을 범죄구성요건에 따라 200, 300, 500, 700, 1,000, 1,500, 2,000, 3,000, 5,000만 원으로 달리 정하고 있다. 벌금 상한액이 5천만 원인 경우는 2016년 형법개정으로 신설된 특수강요죄(형법 제324조 제2항) 외에는 없다. 다만,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벌금 상한액이 5천만 원이다.
- 1일 벌금액의 상한을 100만 원으로 정한다면, 벌금 100일은 1억 원이 최고액이 된다. 만약 통일형법 시안과 같이 벌금 일수의 상한을 360일로 한다면, 3억 6천만 원이 벌금 최고 상한액이 된다. 현행 형법 벌금액의 상한보다 훨씬 높아지는 결과다. 따라서 1일 벌금액의 상한을 1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30~5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1일 벌금액의 하한을 3~5만 원으로 설정한다면, 이 금액과 비교하여 1일 벌금 상한 금액이 하한 금액의 10~20배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벌금의 병과형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벌금의 병과형은 대부분 범죄수익 박탈의 목적이 있고, 현행 몰수·추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즉, 추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벌금 미납의 경우와 달리 노역장유치라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하여 범죄수익을 박탈하려는 입법 취지가 담겨 있다. 따라서 병과형의 벌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박탈 내지 징벌적 배상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몰수·추징 제도의 개선을 통해 벌금형의 목록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벌금의 병과형에 대해서는 일수벌금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 고액벌금 미납자의 황제 노역의 문제점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수십억 원, 수백 억원의 고액벌금은 주로 특가법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제2항(“제1항의 경

우에는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에 따라 조세 포탈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필요적 병과)하여 나오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도 벌금의 병과형 문제의 대표적 사례다. 즉, 범죄수익의 박탈 내지 징벌적 배상의 목적으로 고액벌금을 부과해왔던 것이다. 이 역시 몰수·추징 제도의 개선을 통해 그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액벌금의 부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조세포탈 금액의 2~5배 필요적 벌금 병과 규정으로 인한 고액벌금은 우리나라 형법이 상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모습과 너무 배치되고 있고, 이로 인해 노역장유치 제도 자체의 왜곡까지 야기하였다.

- 일수벌금제를 벌금의 병과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1일 벌금액의 상한을 높게 설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와 같이 벌금 병과규정에 의한 고액벌금의 액수 자체를 낮추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3. 사법 업무 가중, 시기상조론에 대한 비판

- 검찰 업무나 사법 업무의 가중은 일수벌금제의 도입 반대 논거가 될 수 없다. 국가업무가 가중된다고 해서 벌금 형벌기능의 왜곡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연간 벌금 징수 금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 전담 부서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1990년대 초에 진행된 형법개정 과정에서도 일수벌금제도의 도입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와 비교하면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등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훨씬 용이해졌다. 또한 국민연금 산정, 건강보험 산정,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 등에 있어서 자력에 대한 판단이 세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도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시 경제적 능력(소득 분위로 0구간에서 10구간까지 구별하여 판단)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 여부, 장학금액의 차등 지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불법의 경중에 따른 벌금의 일수 선고

- 현행 총액 벌금제도는 벌금 액수의 경중에 의하여 불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음
- 일수벌금제도는 불법의 경중을 일수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임
- 위법성 판단은 보편적 기준을 따르지만, 책임 판단은 개별적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음
- 불법의 경중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벌금 액수는 형벌효과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정의에 부합함
- 명칭을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한다면 빈부의 차이로 인한 형벌효과의 불평등성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시민에게 쉽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자칫 정치적으로 부자만 강하게 처벌하려는 의도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다.
- 명칭을 ‘일수벌금제’로 하여 행위자의 범죄의 불법의 경중을 벌금의 일수와 일치시키고, 그 일수는 자유형의 형기와 마찬가지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일수벌금형제도에 대한 토 론 문

김진우 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 본 발표 내용은 법무부 또는 정부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는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 먼저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형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소병철 의원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벌금형은 자유형, 특히 단기 자유형의 부정적 영향을 없앨 수 있고 범죄자에게는 재산 박탈을 통해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가지므로 효과적인 형벌 수단 중 하나이나, 사람 별로 경제적 격차가 커진 현대 사회에서는 **범죄자의 재산 수준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기존 총액벌금형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수벌금형 내지 재산비례 벌금형 제도가 논의**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형벌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하여 총액벌금제가 가진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일수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발제자분들께서 충분히 개진해 주셨으므로, 저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되 **일수벌금제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난관을 보완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 1. 계속 언급되는 사안이지만, **책임주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는 여전히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임주의 문제만으로 일수벌금제를 배척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지만, 해외 입법례 상 총액벌금형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도 다수 존재하고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대한 고려도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신속한 재판 제도를 담보**할 방안도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간 벌금형 사건은 수 십

만건 정도에 이르는 만큼, 제도 도입시 재산조사 등의 절차 과정에서 형사사법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으므로 그 실무적 해소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 3. 또한 일수벌금제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서 경제적 상태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입법 사례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나, 법·제도 체계가 상호 다른 만큼 우리나라 제도에 도입 가능한 범위,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조사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또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계 국가들은 일수벌금제를 도입한 반면 미국 등 구미국가나 일본, 중국 등 아시아계 국가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역사적·제도적 이유는 무엇인지, 영국의 경우 도입 후 약 6개월만에 제도를 폐지하기 된 원인은 무엇인지,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 간에도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전면 도입, 총액벌금제와 혼용 도입 등) 그 원인과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 도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고 국가별 역사·제도 상 여건과 우리나라의 동일성·차이점을 충분히 검증하여,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미리 착안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최적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5. 구체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려 사항으로는 형법뿐만 아니라 각 개별법에 규정된 벌금형의 총액 부분 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만만치 않은 작업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의 집행유예기준, 구속·체포 등 제한 기준, 공무원 자격이나 선거권의 제한 기준, 출국금지 기준 등 총액벌금제를 기준으로 정해진 법률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그 준비작업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렇듯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해서 검토해야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 만큼, 바람직한 제도 개선 모델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오늘 토론회와 같은 논의와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일수벌금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근거 및 국민 여론 상황부터,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 세밀한 부분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발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재산비례벌금제 입법 방안토론회

토 론 문

오창익 사무국장

인권연대

일수벌금제, 지금 당장 시작하자!

인권연대는 2015년 2월 장발장은행을 만들기 전부터 벌금제 개혁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 43,199” 2009년 한 해 동안 환형유치로 구금된 벌금미납자의 숫자를 캠페인 이름으로 삼았다.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주체로 인권연대 안팎의 인사들로 ‘43199 위원회’를 꾸려서 활동하기도 했다. 정권적 특성도 있었겠지만, 대체로 무관심했다. 국회를 쫓아다니며 벌금형 집행유예, 일수벌금제 도입, 벌금의 카드 납부, 분할 납부, 사회내 처우 강화 등을 요구했지만 관심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은 별로 없었다. 몇 년 동안 꾸준히 노력했지만, 손에 쥘 성과는 없었다. 답답했다. 형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벌이 공정해야 한다는 요청인데도 그랬다.

공여지책으로 장발장은행을 만들었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들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인권단체 입장에서 벌금 미납자들에게 돈을 융통해주어 감옥행을 막아 보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실제로 그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구체적 방도 같은 것은 없었다. 당장의 고통, 단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끌려가는 그 무의미하고도 불필요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다.

장발장은행의 대출은 신용 조회 없이, 무담보, 무이자로 진행한다. 지금까지 모두 74차에 걸쳐 898명의 시민에게 1,579,507,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장발장은행의 재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다. 12월 21일 현재(오전 10시) 9,551명의 개인, 단체, 교회에서 모두 1,214,448,624원의 성금이 이어졌다. 이런 일은 가당한 일일인지는 모르지만, 극히 일부 문제만을 해결(그것도 일종의 미봉책으로)할 뿐이다. 제대로라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신기하게도 장발장은행 설립 이후에 국회도 제도 개혁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염수정 추기경을 모시고, “국회로 간 장발장”이란 행사(2015년 6월 4일)를 치른 게 도움이

되었다.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이는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과 벌금의 카드 납부 등의 일부 개혁 성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아직 일수벌금제 도입 등 본질적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지만, 집권 후반기가 되었어도 집권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었어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도 소병철 의원처럼 사명감 있는 법조인 출신 의원이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이런 토론회를 열어주어 고맙다. 소 의원의 노력을 시작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적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형벌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었다. 짧은 재임 기간 때문인지 의지 때문인지 이걸 그냥 언급에서 끝냈다. 비슷한 맥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징계 직후에 벌금형 집행유예를 활성화하란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형벌의 평등을 위한, 또는 가난한 시민을 위한 진지한 관심인지 아니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입바른 소리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검찰총장의 경우 지금껏 내내 가만있다가 이제야 벌금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무척이나 아쉬운 태도이다.

박미숙 선임연구위원님과 최호진 교수님의 발제는 시의적절하며 또 매우 진취적이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일수벌금제는 별도의 입법 없이도 당장에 시행가능한 제도다. 물론 바람직하기로는 형법 개정과 관련 법률에 대한 일괄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체계에서도 실무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가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1984년(조지 오웰식의)이어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이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정액 소득이 발생하며 자동차를 소유하는 등의 현실적인 삶을 영위하는 한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개인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 상당한 파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가능성에 기반해서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법학자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정확한 재산과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서 일수벌금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그저 무의미한 핑계에 불과하다. 독일연방공화국이 1975년에 이미 시행했던 제도를 2020년의 대한민국이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저 궤변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1975년의 독일만큼도 안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또한 박미숙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에서처럼 이미 30년 동안이나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는데도 여전히 ‘시기상조’라거나 또는 다른 핑계를 대는 것은 공평한 형벌 자체에 대한 반대일뿐이다.

최호진 교수의 발표문을 다시 보자.

“일수벌금제의 도입이 처음 제기되었던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도입을 추진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실명제 및 금융실명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개인의 자산을 조사할 방법이 다수 있으며,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기관의 협조가 과거에 비해서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제로 일수벌금제를 반대하는 법학자나 국회의원이 실제로 있다면 만나보고 싶다. 함께 토론하고 싶은 마음이다. 흔히 언론 등이 인용하는 “한 법학자, 어떤 검사, 모 의원” 말고 실체를 만나고 싶다. 박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알려준 일반시민과 전문가들의 설문 응답결과는 ‘재산비례벌금제(일수벌금제)’가 어떤 제도인지 들어본 적이 없고 낯설어서 그렇지, 제도의 취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국민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일수벌금제는 기존의 이러한 제도(소득이나 재산과 연동된)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금의 법체계 아래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국민연금 납부증명이나 건강보험 납부증명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각기 다른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이 해당 납부증명이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함께 보내면 법원에서 간단한 조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은 공평한 형벌 집행을 위한 업무 협약만 사전에 맺어놓으면 된다. 뭐 하나 문제 될 게 없다.

물론 일수벌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형법과 관련 법률들을 개정해야 한다. 일종의 특별조치법을 통해 벌금형 부분을 일괄해서 조정하는 등의 입법적 노력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입법 이전이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많다.

일수벌금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할 때 살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호진 교수님의 안내에 따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를테면 법인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총액벌금제를 유지하면 된다. 여타의 문제도 비슷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입법기술적 측면에서의 곤란 등이 아니라 정책의지다.

당장 벌금형 집행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절실한 까닭이 있다. 마침 어제(12월 21일) 장발장은행이 성명을 냈다.

코로나19 시대, 노역장 유치를 멈춰달라!

장발장은행 긴급 성명

- 당분간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라.
-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중단하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량 확진사태를 맞아 수용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한국의 구금시설은 정원을 넘는 과밀수용으로 악명이 높았다. 밀집도가 높은 집단 생활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한다면, 지금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량 감염 사태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재난이 약자, 소수자의 지위에 놓인 사람,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더 심각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원활한 외부 진료를 받을 수 없기에 수용자들의 “살려달라!”는 아우성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절규이다.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미결수들의 집단 감염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다.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벌금 낼 돈이 없어, 감옥에 갇히게 되는 무의미하고도 불필요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만든 <장발장은행>(은행장: 흥세화)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換刑)유치(노역장 유치)를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해달라고 정부 당국에 호소한다.

벌금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벌이다. 벌금 낼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단지 돈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은 형사정책의 심각한 잘못이다. 더군다나 지금의 구금시설이 방역에 취약성을 드러낸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라도 벌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유치를 멈춰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시절이다. 단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은 정부의 결단만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당분간만이라도 벌금형 집행을 멈춰야 한다. <끝>

당장 벌금형 집행을 멈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단지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서울동부구치소 같은 곳으로 보내야 할 까닭은 어디에도 없다. 국가가 감옥의 방역에서 일정하게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자인하면 그만이다. 굳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시민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너무 잔혹하다.

독일처럼 1대 30,000의 비율로 형벌의 평등성을 확보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저 1대 30 정도여도 좋다.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일수벌금형제도에 대한

토 론 문

박혜림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먼저 두 분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일수벌금제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의 인식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검토해주신 박미숙 선임연구위원님과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의 정당성과 도입 시 방향성을 모색해주신 최호진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박미숙 선임연구위원님이 수행하신 연구에서 일반인 및 전문가 모두가 형벌효과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은 현행 벌금형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최호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벌효과 측면에서 실질적 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수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은 형벌에 있어서 동일한 형벌효과를 줄 수 있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형벌상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본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시키는 것이 평등하고 행위자의 재산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 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동일한 형벌효과를 주기 위해 행위 책임의 범위안에서 행위자 책임을 고려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위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상한선으로 삼고 특정 행위자의 고유한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을 하는 것이 행위형법의 틀을 깨는 것이 아니듯, 행위에 따른 일수를 정하고 특정 행위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수에 상응하는 정액을 정하여 양형하는 것이 행위형법과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실질적 평등주의가 이론적으로 정당성을 얻는 것 이외에 현실 집행상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때 최호진 교수님께서 일수벌금제를 도입할 시, 정책목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만 그에 따라 구

체적인 방향과 기준, 적용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수벌금제 제도 자체가 현재 벌금형제도와 노역장 유치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벌금형 제도 개혁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야만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과연 일수벌금제의 정책 목표를 어디로 잡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목표 설정에 따라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토론문에서 우리나라의 일수벌금제 도입 시 검토될 필요가 있는 쟁점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을 하고자 한다.

1. 정책목표와 최대 벌금일수 설정

최호진 교수님께서 16페이지에서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제도도입의 정책적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벌금형의 형평성을 높이고 형벌효과의 불평등성을 낮추는 게 목표라면 최대벌금일수를 스칸디나비아국가들처럼 비교적 낮은 일수를 설정해야 하고 독일과 같이 제도 도입을 통해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 또는 단기자유형의 증가로 인한 구금비용의 절감이 정책적 목표라고 한다면 최대 벌금일수는 비교적 높은 일수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 일수벌금제를 도입한 다기 보다는 황제노역, 불평등 노역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제책으로 일수벌금제가 논의되고 있다. 즉, 벌금형의 형평성이나 형벌효과의 평등성을 지행하기 위해 적합한 정책적 목표이라는 분석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 목표는 벌금형의 형평성이나 형벌효과의 평등성 지향이지만, 스칸디나비아국가들과 달리 벌금형의 형평성이나 형벌효과의 평등성을 단순히 경미한 범죄에서만 얻기 보다는 범죄의 대가로 막대한 이윤을 추구한 이윤범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일수를 낮출 수 없는 점에서 정책적 목표에 따라 최대벌금일수를 정하는 다른 해외 입법례를 토대로 한 분석을 그대로 따를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진다.

2. 일수정액 상한과 노역장유치제도 연계 시 한계

총액벌금제에서 일수벌금제로 전환할 경우 불법과 책임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그 일수에 맞는 정액을 소득 및 자산의 수준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형법 제70조에 노역장유치 기간이 3년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수벌금제 전환 시 오히려 과도한 이익을 보고도 벌금액이 오히려 낮아지는 사안도 발생할 수 있다. 노역장유치 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으로 한정되게 되어 벌금의 상한이 정해질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최대 1일정액이 1천만원으로 산정한다면 109억 정도의 벌금액수가 최대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에 따라 사기, 횡령, 뇌물죄, 관세법 위반, 조세포탈과 같은 죄의 경우 이익가액이나 그 가액의 몇 배를 가중하여 벌금을 병과하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벌금액이 가능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뢰액이 50억이상 규모가 매우 클 경우에는 오히려 벌금을 병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면할 수 있다. 이는 조세포탈이나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를 제한하거나 이 경우에는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일수벌금제 도입 시 중점과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금액별 벌금형 선고 현황을 살펴보면, 96%이상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현행 법률이나 양형에 있어서 자유형과 벌금형 상호간의 합리적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은 있으나,¹⁾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벌금액을 1천만원 비율로 산정한다면 벌금 500만원이하를 징역형으로 환산한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되고 이는 중한 범죄라고는 할 수 없다.

1) 물론 자유형 1년당 명목 벌금액이 법률마다 크게 다른 현상은 여전히 있으나 법정형에 나온 자유형과 벌금형의 환산 기준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김두일, "죄형법정주의: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양형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징역 1년에 벌금액 수준은 880만원임. 정부는 자유형 1년당 벌금액을 1천만 원으로 통일하는 일련의 입법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물가상승에 따른 자유형과 벌금형 간의 불균등 문제가 일부 개선된 바 있음

표 1 | 금액별 벌금형 선고 현황

(단위: 건, %)

| 년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500만원 이하 | 790,302 (96.87%) | 757,032 (96.69%) | 718,023 (96.67%) | 741,229 (96.82%) |
|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22,730 (2.79%) | 22,678 (2.9%) | 21,766 (2.93%) | 21,361 (2.79%) |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50 (0.28%) | 2,464 (0.31%) | 2,288 (0.31%) | 2,350 (0.31%)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06 (0.03%) | 236 (0.03%) | 234 (0.03%) | 249 (0.03%) |
| 1억원 초과 | 353 (0.04%) | 504 (0.06%) | 449 (0.06%) | 414 (0.05%) |

자료: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264호) 검토보고서, 2019. 7., 14면 참조

대부분의 사건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선고될 수 있을 정도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액이 부과되는 실무적 상황을 볼 때, 일수벌금제 도입 시 전체적인 제도의 설계는 경제력이 없거나 저소득 취약계층에 있어서 벌금으로 인해 노역장 유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벌의 불평등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수벌금제 도입과 더불어 현행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장발장은행, 벌금형의 분납제도 등을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를 위해서 최호진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저소득 범죄자와 개인소득이 없는 범죄자, 범죄소득 및 지하경제활동 소득이 있는 범죄자, 자본자산을 보유한 범죄자의 경우 일수정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의 자산 또는 소득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되, 법원이 국세청, 은행 등의 관련 기관 등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확실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양형위원회에서 벌금형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정립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일수벌금제 도입 시, 일수정액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정책세미나

토 론 문

이경재 사무관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

1. 서론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소병철 의원님, 한인섭 원장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박미숙 박사님과 최호진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민들께서 우리 형벌 제도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자산비례벌금제의 도입에 찬성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위한 전제로서 검토가 필요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큰 도움을 받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2. 자산비례벌금제의 취지 및 필요성

박미숙 박사님과 최호진 교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벌금제도 하에서는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그 형벌효과가 달리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자산비례벌금제라는 새로운 형벌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피고인의 경제력에 대한 조사

재산비례벌금제가 그 취지에 맞게 효용을 발휘하고 나아가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정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호진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에 대한 모델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피고인의 자산 또는 수입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과 소득 모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을 선제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의 소득 외에 자산까지 기준으로 삼게 될 경우, 실제 사안에서 특정 자산(채권, 비상장주식, 사업권 등)의 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자산 외에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게 될 경우, ‘**황제벌금**’(가칭)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신속한 재판과의 관계

재산비례벌금제가 도입될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 심리하여야 하므로, 그 심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의 수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의 벌금 사건이 실제 약식절차를 통해 간이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따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담보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심리의 지연을 초래하게 되어 일종의 딜레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 상충되는 이익(경제력의 정확한 조사 담보 vs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불법성의 기준

현행법상 벌금형은 “□□만원 이하의 벌금”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개별 범죄마다 그 상·하한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총액벌금제 하에서는 벌금액이 불법성의 기준이 되

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자산비례벌금제 하에서는 불법성의 기준이 금액이 아닌 ‘일수’가 되므로, 현행 법체계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처벌규정을 독일의 경우처럼 단순히 “벌금”으로만 규정하거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처럼 “△△일수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별 범죄별로 그 불법성의 크기에 맞는 정확한 일수 산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 동일한 일수가 부과되는 것이 해당 제도의 필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6. 마치며

자산비례벌금제도의 도입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벌금형의 기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경제력 파악이 정확하게 담보될 수 있는 제도 설계 및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이라는 이익과의 조화, 제도 도입 시의 효과 및 부작용, 다른 현행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형벌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책세미나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바람직한 형사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